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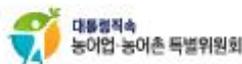


지역사회 먹거리돌봄 법제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일시 2021.12.13.(월) 14:00~16:00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

공동주최



이개호 의원, 남인순 의원, 위성곤 의원, 정춘숙 의원, 전재수 의원

‘지역사회 먹거리 돌봄’ 법제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2021년 12월13일(월) 14시~16시, 국회 의원회관 제4간담회실

[공동주최]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대한민국 국회 이개호 의원, 남인순 의원, 위성곤 의원, 정춘숙 의원, 전재수 의원

program

지역사회 먹거리 돌봄 법제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진행순서

시간 계획		주요 내용
14:00~14:05	'5	• 참석자 소개
14:05~14:15	'10	• 인사말씀
14:15~14:30	'15	• 주제발표 1. 지역사회 통합 먹거리 돌봄의 법제화 필요성 석재은 (한림대학교 교수)
14:30~14:45	'15	• 주제발표 2. 지역사회 먹거리 돌봄 사례와 활성화 방안 황영모 (전북연구원 연구위원)
14:45~15:45	'60	• 좌 장 : 김흥주 (원광대학교 교수, 한국농촌사회학회 회장) • 지정토론 program 김재철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농수산식품분과 위원) 김정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이인우 (사회적경제지역화연구소 대표) 장영주 (국회입법조사처 산업자원팀장 직무대리) 유동욱 (보건복지부 통합돌봄추진단 팀장) 이재식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복지과 과장)
15:45~16:00	'15	• 정리 및 폐회

자료목차

- » 인 사 말 1
- » 주제발표문
 - 1. 지역사회 통합 먹거리 돌봄의 법제화 필요성 17
석재은 (한림대학교 교수)
 - 2. 지역사회 먹거리 돌봄 사례와 활성화 방안 57
황영모 (전북연구원 연구위원)
- » 지정토론문
 - 1. 소규모 공급체계 확충을 통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활성화 제안 95
김재철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농수산식품분과 위원)
 - 2.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 중 먹거리 돌봄의 주요 과제 제안 98
김정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 3. 먹거리 돌봄 추진체계와 조달체계 마련 필요 105
이인우 (사회적경제지역화연구소 대표)
 - 4. 지역사회 먹거리 돌봄 법제화 검토 107
장영주 (국회입법조사처 산업자원팀장 직무대리)

인 사 말

개 회 사



정현찬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 정현찬입니다.

오늘 ‘지역사회 먹거리돌봄 법제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국회 이개호 의원님, 남인순 의원님, 위성곤 의원님, 정춘숙 의원님, 전재수 의원님과 함께 개최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토론회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고령사회 대비, 건강하고 품위있는 노후 생활보장-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 보장을 위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도입’을 실현코자 지역사회통합돌봄법 제정과 먹거리 돌봄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사회복지 및 먹거리 관련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생산자와 소비자들을 모시고 다양한 의견을 모으고자 마련한 자리입니다.

관계부처 협동으로 추진 중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과 노인돌봄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에서 식사 영양 서비스 사업은 주민들의 요구와 만족도가 매우 높았으며 예산 비중 또한 높은 대표적인 사업입니다.

특히 건강한 먹거리로 돌봄 대상자의 건강상태가 호전되고, 삶의 만족도가 높아졌다는 조사 결과는 먹거리 지원 사업의 중요성을 드러내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농특위는 지난 2월 국가식량계획을 수립하여 국민 누구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보장 실현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특히 국가식량계획의 핵심 과제인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과 먹거리 돌봄 사업이 연계된다면 지역 주민들의 먹거리 보장은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어르신들이 자신이 살던 지역에서 자신이 평소에 즐기던 음식들을 먹으며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지역사회통합돌봄법’에 먹거리 돌봄 관련 규정이 포함되어 먹거리 보장이 강화되길 바랍니다.

끝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서형수 부위원장님과 좌장님, 발제자, 토론자 한분 한분께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온라인으로 토론회에 참여하시는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축 사



국회의원 이개호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담양·함평·영광·장성 국회의원 이개호입니다.

‘지역사회 먹거리 돌봄 법제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번 토론회를 함께 만들어주신 남인순 의원님, 정춘숙 의원님, 위성곤 의원님, 전재수 의원님과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먹고 사는 일’입니다.

보릿고개가 사라지고 지금처럼 먹거리가 풍족한 세상이 어디 있냐고 하지만, 고개를 돌려 보면 아직도 굶거나 배고픔을 느끼는 분들이 주변에 많습니다.

질병관리청이 조사한 ‘전국 시도별 식생활 형편(2019)’을 살펴보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먹거리의 절대적인 양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구 비중이 전국 4.1%에 달했으며, 지방의 경우 그 비중이 더 높게 나와 먹거리의 불평등과 양극화의 심화가 심각한 실정입니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우리 사회 곳곳에서 취약 계층의 어려움이 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이 중단되고 무료 급식소도 대부분 문을 닫아 먹거리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은 더 힘겨운 시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먹거리는 인간의 기본권입니다. 또한 먹거리의 안정적인 공급은 인간의 존엄성과 건강한 삶을 보장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소득 수준과 사회적 취약성에 따라 식생활의 빈부 격차가 더욱 확대되는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지역사회 먹거리 돌봄’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에 따라 지역사회에서 먹거리 돌봄을 매개로 하는 통합돌봄의 확대 요청되며, 먹거리 돌봄은 다른 복지 서비스와 연계되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먹거리 돌봄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법제화가 꼭 이뤄져야 합니다.

오늘 이 토론회가 지역사회의 참여와 나눔을 촉진하고 정부의 먹거리 지원정책이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 ‘지역사회 먹거리 돌봄’이 우리들의 삶을 지키는 든든한 사회 안전망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지역사회 먹거리 돌봄 법제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축 사



국회의원 남인순
(국회 보건복지위원·더불어민주당 서울송파병)

반갑습니다.

공공의료포럼 공동대표로 일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송파구병 남인순 국회의원입니다.

다사다난한 2021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에 이개호·위성곤·정춘숙·전재수 국회의원님과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및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와 함께 “지역사회 먹거리 돌봄 법제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공동으로 주최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자리에 함께하여 주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토론회의 주제발표를 맡아주신 석재은 한림대학교 교수님, 황영모 전북연구원 연구위원님을 비롯하여 좌장을 맡아 토론회를 진행하실 김흥주 원광대 교수님, 토론을 하여주실 김재철 농특위 농수산분과위원님, 장영주 국회입법조사처 산업자원팀장 직무대리님, 김정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님, 이인우 사회적경제지역화연구소 대

표님, 유동욱 보건복지부 통합돌봄추진단 팀장님, 이재식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복지과장님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위한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1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상자의 욕구에 맞추어 주거·보건의료·요양·돌봄 등 서비스를 연계·통합 제공하여 지역사회 돌봄 생활을 지원하는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 정책의 선도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춘천시와 화성시에서 노인돌봄에 필요한 요양·의료·주거·생활지원 등 보건복지 서비스의 연계·통합을 위한 노인돌봄 전달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의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2020년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전체 인구의 15.7%에 달하며, 오는 2025년에는 20.3%에 이르러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그간의 보건 및 복지 서비스는 분절되고 파편화된 제공과, 시설위주의 돌봄 서비스 제공에 머물렀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으며, 지역사회통합돌봄 사업은 복합적 욕구를 가진 돌봄 대상자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돌봄·복지·보건의료·주거지원 등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불필요한 시설 입원 등을 방지하고 복지서비스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것이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는 정부 관계부처 협동으로 추진하여 온 지역사회통합돌봄 사업 중에서 식사·영양 서비스를 지역사회 먹거리 순환체계와 연계하여 추진할 필요성을 공론화할 예정인데, 먹거리 돌봄은 돌봄 대상자의 건강관리 및 삶의 질과 직결된 서비스로 국회에서 입법을 추진 중인 「지역사회통합돌봄법(안)」에 지역사회 먹거리 돌봄을 포함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소중한 자리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저는 올해 정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역사회 취약계층 식사·영양관리 활성화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국민건강통계 상 영양섭취 부족인구 비율 추이’자료에 따르면, 만 19세 이상 영양섭취 부족자 비율(%)이 2015년 8.6%에서 2019년 14.4%로 5.8%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은 2015년 4.7%에서 2019년 9.9%로 늘었고, 여성은 2015년 12.7%에서 2019년 19.3%로 늘었습니다.

인구구조의 고령화로 노인 인구 증가, 1인 가구 증가로 인한 섭취율 저하, 젊은 여성의 다이어트, 성인 남성의 음주율 증가 등 일부 계층의 영양부족 등이 영양섭취 부족인구 비율이 증가하는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사회통합돌봄 사업의 우선적 배려 대상인 노인·장애인의 경우 치아 손실 및 부실로 인한 저작능력 저하와 소화흡수 기능 약화, 활동량의 감소 등 다양한 요인들로 식품을 충분히 섭취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영양소의 체내 이용률도 떨어져 영양불균형 상태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지역사회통합돌봄 사업에 먹거리 돌봄을 포함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판단되며,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앞으로 국회 입법 및 정책 활동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바쁘심에도 함께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오는 2022년 임인년(壬寅年)은 힘이 넘치고 용맹스런 검은 호랑이(흑호, 黑虎) 해인데, 소망하는 일 모두 성취하시고, 건강과 행복, 평화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축 사



국회의원 위성곤

안녕하십니까. 제주 서귀포시 국회의원 위성곤입니다.

오늘 ‘지역사회 먹거리 돌봄 법제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공동 주최로 함께 해주신 남인순 의원님, 정춘숙 의원님, 이개호 의원님, 전재수 의원님과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관계자 여러분들께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며칠 전 세계 언론이 일제히 보도한 ‘세계 불평등 보고서 2022’에 따르면 ‘한국은 서유럽 국가들만큼 부유하지만 빈부 격차는 훨씬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소득 면에서는 상위 10%와 하위 50%의 격차가 14배였으며, 자산 면에서는 양쪽의 차이가 52배나 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7월 개최된 유엔무역개발회의를 통해 우리나라는 57년만에 개도국 그룹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인정받는 기쁨을 누렸지만, 압축 성장의 이면에 자리한 빈부격차와 이로 인한 양극화는 진정한 선진국으로 가는 데 있어 또 하나의 극복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역사회 먹거리 돌봄은 이러한 사회적 양극화를 극복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를 근간으로 한 돌봄과 먹거리 복지를 비롯한 다양한 복지 서비스의 통합으로 소외된 이웃을 따뜻하게 보듬을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해 나가는 방안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관계 부처 협동으로 시범추진 중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사업 중 ‘식사·영양 서비스’를 지역사회 먹거리 순환체계와 연계시키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정춘숙 의원과 전재수 의원이 발의한 ‘지역사회통합돌봄법’에 ‘먹거리 돌봄’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키기 위한 공론화의 자리입니다.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위기와 재난이 일상화된 시대에 무엇보다 우선해야 할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입니다. 사회적 안전망 확대 논의를 활성화하여 우리 사회에 깊숙이 자리하고 있는 양극화와 빈곤의 문제 해결하고 대한민국이 진정한 세계의 모범국가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갔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축 사



국회의원 정춘숙

안녕하세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경기 용인시병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춘숙입니다.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의 제안으로 <지역사회 먹거리 돌봄 법제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함께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행사를 주최하는 존경하는 이개호 의원님, 남인순 의원님, 위성곤 의원님, 전재수 의원님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감사드립니다. 발표와 토론에 참여해주신 전문가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전합니다.

저는 지난해 11월 「지역사회통합돌봄법」 제정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초고령화 시대에 발맞춰 돌봄 패러다임을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전환하고, 분절된 보건, 복지, 돌봄, 주거 등 사회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는 지역사회통합돌봄 사업에 먹거리 돌봄을 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합니다. 법적 기반 마련, 조례 제정,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 등 다방면의 대책을 함께 논의해나가길 바랍니다.

“밥심은 국력”이라는 말처럼 맛있고 영양가 높은 식사는 일상의 건강과 질병 예방에도 매우 중요합니다. 지속가능한 사회적 돌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먹거리부터 잘 챙겨야 한다는 문제의식에 저 역시 동감합니다.

현재 부산 진구, 춘천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식사·영양지원 사업들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발제와 토론 내용들 참고하여 더 나은 대안들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저 역시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사회 통합 먹거리 돌봄의 법제화 필요성

1. 초고령 사회와 지역사회통합돌봄
2. 왜 먹거리(영양)돌봄에 주목하는가?
3.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과 먹거리(영양)돌봄
4. 먹거리(영양)돌봄 생태계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5. 지역사회 먹거리(영양)돌봄 법제화 필요성

석재은 교수
한림대학교

정책토론회 (2021. 12.13)

지역사회 먹거리(영양)돌봄 법제화 필요성

석재은
한림대학교

논의순서

1. 초고령사회와 지역사회통합돌봄
2. 왜 먹거리(영양)돌봄에 주목하는가?
3.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과 먹거리(영양)돌봄
4. 먹거리(영양)돌봄 생태계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5. 지역사회 먹거리(영양)돌봄 법제화 필요성



**초고령사회와
지역사회통합돌봄**



초고령사회 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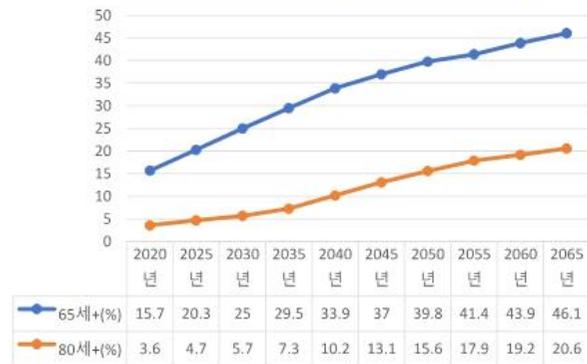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

- ▶ 2025년 65세 이상 노인인구 **1,051만명**, 노인인구비율 20.3%, 초고령사회 진입
- ▶ 2025년 80세 이상 노인인구 **244만명**, 전체인구 대비 4.7%
- 65+ 인구비율 2040년 33.9%, 2050년 39.8%, 2060년 43.9%, 2065년 46.1%
- 80+ 인구비율 2040년 10.2%, 2050년 15.6%, 2060년 19.2%, 2065년 20.6%



자료: 통계청(2020)

65+ 및 80+ 후기 고령인구 비율 추이



지역사회통합돌봄

-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어르신들이 **자신이 살고 곳에서 건강한 노후**(Aging in Place)를 보낼 수 있도록 통합적 돌봄 제공
- 지역사회통합돌봄은 케어가 필요한 주민(노인, 장애인 등)이 살던 곳(자기 집, 그룹홈 등)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보건의료·요양·돌봄·독립생활 지원이 통합적으로 확보되는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 정책(보건복지부,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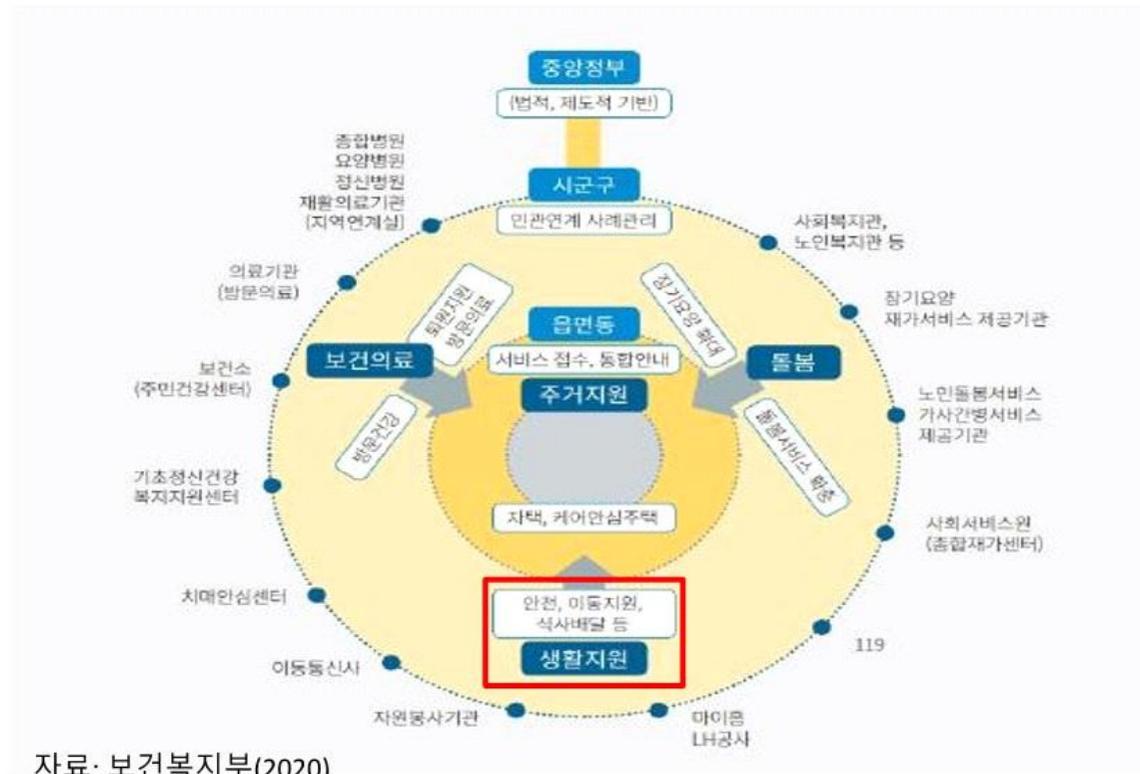
자료: 보건지부 통합돌봄추진단(2021)

- ◆ (국정과제)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위한 지역사회통합돌봄 도입(국정과제43-6) 지역 사회 통합돌봄 기본계획 수립 (1811)
 - 로드맵 1단계(18~22) 선도사업실시 → 2단계(~25) 제공기반 구축 → 3단계(26년 이후) 보편화



자료: 보건복지부(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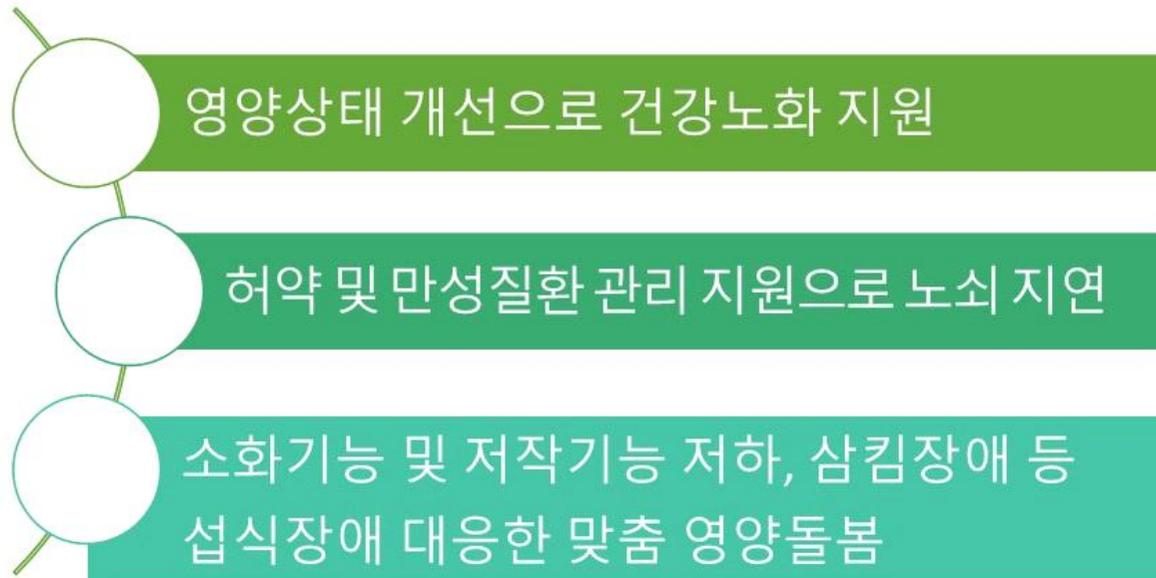
지역사회통합돌봄 추진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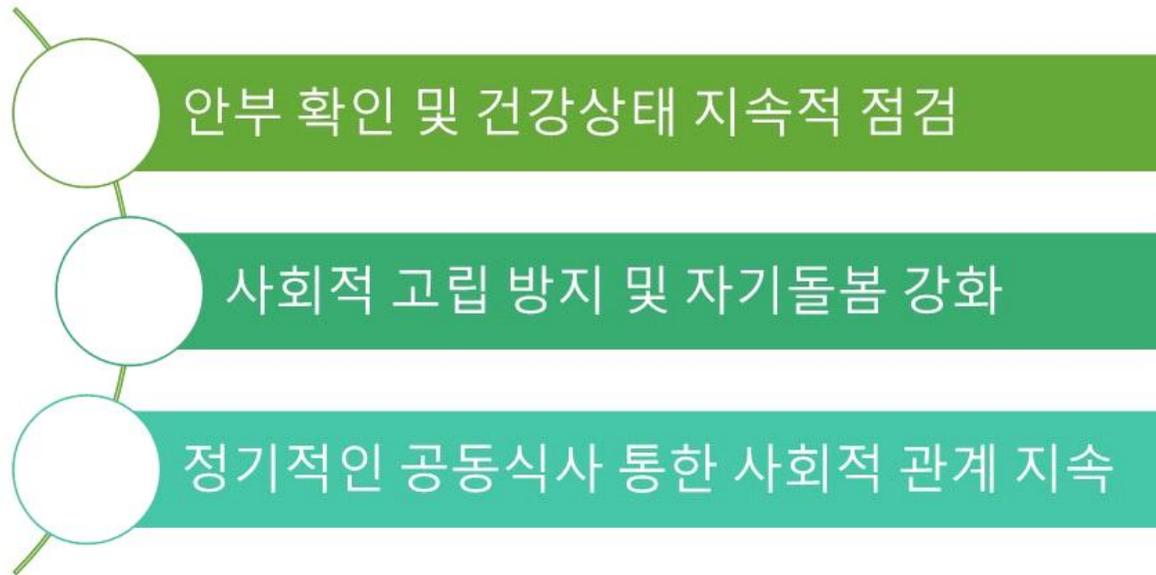
-
- ◆ (보건복지부 선도사업) 대상자의 욕구에 맞추어 주거, 보건의료, 영양, 돌봄 등 서비스를 연계, 통합 제공하여 지역사회 독립생활을 지원하는 선도사업 (16개 지자체: 노인 13, 장애인2, 정신질환자 1) 추진('19~)
 - ◆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시범사업) 노인돌봄에 필요한 영양·의료·주거·생활지원 등 보건복지서비스의 연계·통합을 위한 노인돌봄 전달체계 개편(춘천시, 화성시) 추진(~'22)
 - ◆ (법안) '지역사회통합돌봄법안'(정춘숙의원 '20.11., 전재수의원 '21.7.) 발의
- 

**왜 먹거리(영양)돌봄에
주목하는가?**

1. 삶의 질 향상과 먹거리(영양)돌봄의 중요성



2. 사회적 고립방지 매개체로서 먹거리(영양)돌봄 중요성



3. 비용효과적 돌봄으로서 먹거리(영양)돌봄의 중요성

- 건강노화 기간 연장으로 사회적 기여 제고
- 인지기능 저하 및 영양상태 진입 지연으로 영양비용 절감
- 만성질환 관리로 의료비 절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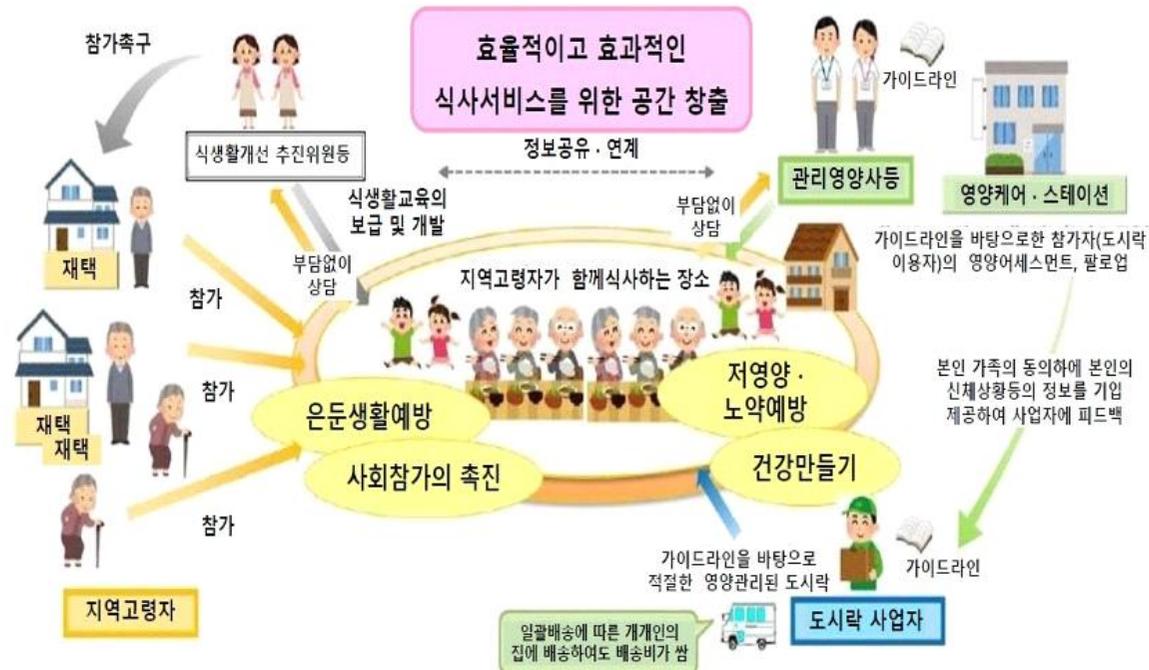
4. 건강한 먹거리산업 생태계와 다양한 일자리 창출

- 건강한 안심 먹거리의 지속가능한 생산과 일자리 창출
- 고령친화식품산업의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 영양돌봄 관리를 위한 일자리 창출

5. 지역사회 돌봄공동체 회복과 먹거리(영양) 돌봄

- 지역생산 안심 먹거리 생산-유통-소비 선순환 생태계
- 생산자와 소비자와의 안심 먹거리 공동체 조성
- 지역사회 주민의 먹거리(영양)돌봄 참여와 지역사회 먹거리돌봄 공동체 조성

건강한 먹거리(영양)돌봄의 기대효과



자료: 김연정(2021) 일본 지역사회 어르신 영영관리 및 식사서비스 사례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과 먹거리돌봄**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 부산진구 영양돌봄사업 사례

- ◆ 본 사업은 통합돌봄대상자 중 건강 및 영양관리가 필요한 노인을 대상으로 무료식사 제공이 아닌 본인부담금이 있는 형태로 노인에게 양질의 식사와 영양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내용	부산진구커뮤니티키친
대상자	통합돌봄대상자 중 건강 및 영양 관리가 필요한 노인(소득만으로 대상자 선정하지 않음)
식사	점심(급식 또는 도시락)+오전·오후 간식, 주 6일 제공
서비스 가격	8,000원
이용자 수	150명 내외
차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 수준에 따른 본인부담금이 있음 (4만원~8만원/월, 100% 본인부담금을 지불하는 경우도 있음) • 노인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한 맞춤형 식사서비스 제공 • 영양사를 통한 식사 모니터링 및 영양관리 • 노인급식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한 사업 체계성 확보 (홈페이지 구축 http://ck.ditackr/, 식사영양관리서비스 시스템내 데이터 구축 중) • 통합돌봄창구를 통한 타 돌봄과의 연계 체계 마련

자료: 한진숙, 동의과학대 교수(2021) 부산진구 커뮤니티키친 운영사례

대상자 선정기준

대상자 선정기준	
소득	• 기준중위소득 160% 이하
연령 및 지역	• 만 65세 이상 •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 대상지역 거주자(5개동) (부산진구 범천 2동, 가야 1동, 개금 2동, 개금 3동, 초읍동, 부진 1동)
욕구	• 거동불편, 신체기능 저하 등으로 혼자 거동하기 어렵거나 독립적인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우며, 돌볼 수 있는 가족 등이 부재하여 스스로 식사 준비가 어려운 노인
우선순위	• 1순위: 통합돌봄 정책대상 중 돌봄주택(공유주택 노인돌봄주택 중간시설) 거주자 • 2순위: 요양병원(시설)에서 퇴원(퇴소)하여 지역사회로 복귀한 대상 • 3순위: 수술·입원 후 퇴원하여 단기간 돌봄이 필요한 대상 • 4순위: 낙상관리 및 다제약제관리가 필요한 대상 • 5순위: 70세 이상 노인 중 돌봄사각지대에 있는 자, 노인장기요양보험 3등급~등급 외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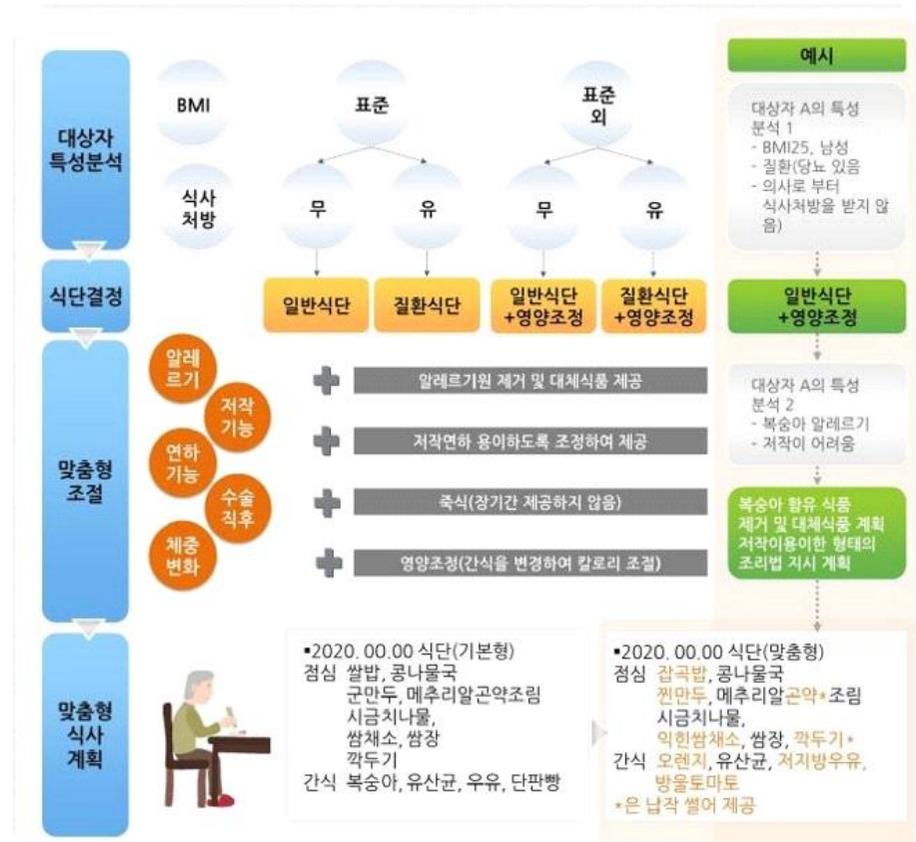
서비스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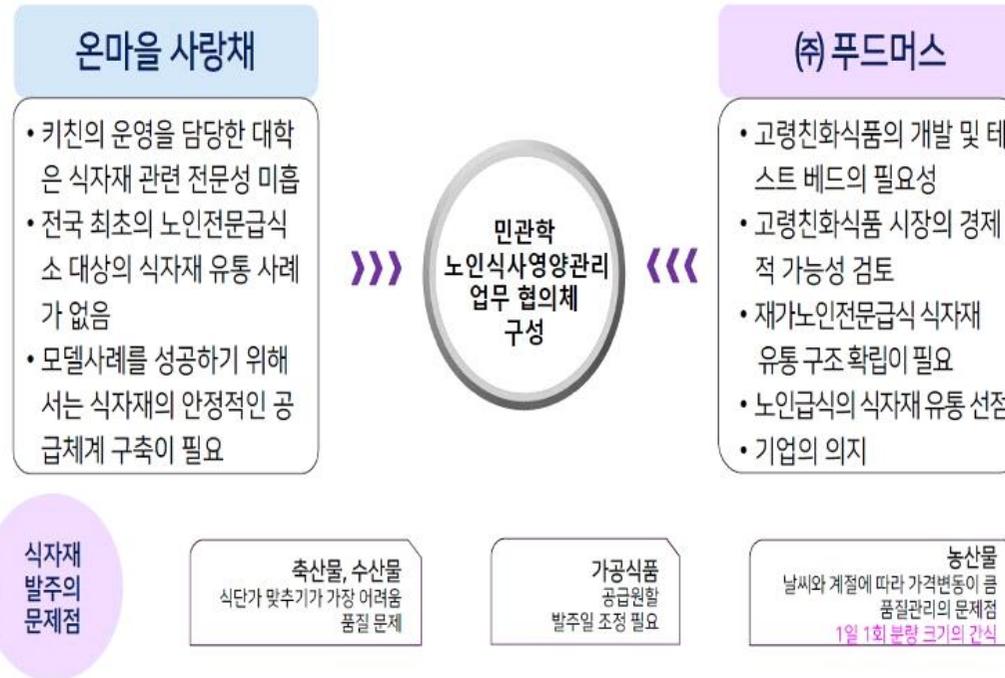
자료: 한진숙, 동의과학대 교수(2021) 부산진구 커뮤니티키친 운영사례



자료: 한진숙, 동의과학대 교수(2021) 부산진구 커뮤니티키친 운영사례



자료: 한진숙, 동의과학대 교수(2021) 부산진구 커뮤니티키친 운영사례



자료: 한진숙, 동의과학대 교수(2021) 부산진구 커뮤니티키친 운영사례

행정안전부 노인돌봄전달체계 개편사업: 춘천 및 화성 영양도시락서비스 사례



자료: 행정안전부(2021)

춘천시 영양도시락사업

경제·사회·신체적인 이유로 적절한 식사에 어려움 상존,
식사·영양관리를 통해 건강 악화를 예방하여 건강한 일상생활유지 지원



사업내용

- (동지역) 1식 주5일 개별도시락 및 배달지원
- (외 광) 주1회 반찬지원

사업대상

- 건강악화 예방을 위해 식사·영양관리가 필요한 노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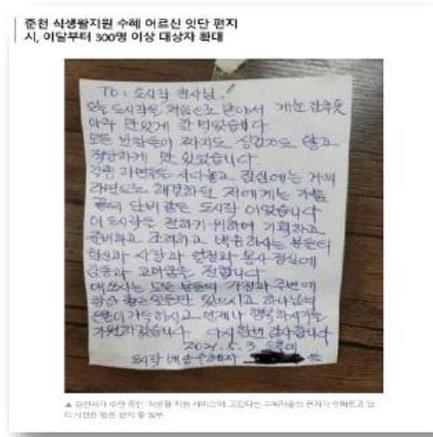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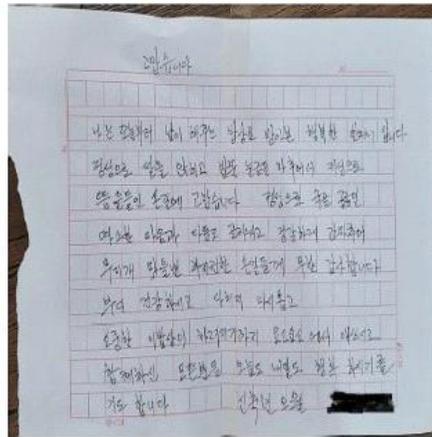
추진실적

- (동지역) 320명
- (외 광) 100명



(소득) 기초연금 수급자 중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자
(건강) 거동불편 영양결핍 > 거동가능 영양결핍 순

자료: 춘천시(2021)



자료: 춘천시(2021)

사례: 복지유니온 주관 서울시 고령 만성질환자 영양간편식 지원사업

◆ 목적

- 만성질환이 있는 고령자의 식생활 욕구 조사
- 욕구조사 결과를 반영한 식사 및 영양관리 서비스 제공
- 고령 만성질환자가 자립적인 식생활을 영위하고, 건강악화 예방 및 건강증진을 위해 스스로 노력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추진실적

- 고령 만성질환자 242명 대상 개별 식생활 욕구 조사 및 식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탐색
- 스크리닝 결과를 기반으로 영양상담 및 식생활 훈련 시행.
- 방문 및 전화 상담으로 실시 : 스스로 적정 식사량, 적정 수분섭취량, 간식량 등을 인지하는 훈련
- 만성질환 및 저작기능 등을 고려한 맞춤 식사서비스 제공
- 서비스 제공의 효과 분석 위한 2차 스크리닝 실시

자료: 장성오, 복지유니온(2021)

식사서비스 및 식생활 교육, 훈련 주요결과

- 삼키거나 사례 (음식과 물)가 자주 들던 것이 두드러지게 개선. 특히 정기적인 식사 배달을 통해 규칙적으로 음식을 섭취할 수 있게 되어 자연스럽게 씹고 삼키는 훈련이 반복된 것이 섭취능력 개선에 기여
- 항상 단순하던 식생활이 식단을 기반으로 제공된 식사로 여러 가지 식품을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는 식생활로 변화가 점차적 섭취능력 개선에 작용
- 식사배달서비스 및 교육을 통하여 3끼 섭취하는 사람이 늘었으며, 1끼 섭취가 2끼 혹은 3끼로 증가함. 한편, 식사횟수 증가로 전체 섭취량이 늘어난 경우도 있지만, 환경여건이 어려운 경우 배달된 식사를 1일 2회나 3회로 나누어 식사하는 경우도 발생함 (특히 당뇨질환자)
- 전반적인 식품군의 섭취 횟수가 증가하였으며, 특히 단백질, 채소류, 과일의 섭취빈도가 두드러지게 개선되었음. 이는 과일 등 간식을 포함하는 정기적인 식사배달서비스가 주요 증가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임.
- 식사방해요인으로 저작곤란, 식욕저하, 소화불량, 변비 등 노화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문제들을 인식하고, 상담교육을 통해 저작이나 연하곤란 등이 섭취를 방해하는 원인이 된다는 이해 수준 제고

자료: 장성오, 복지유니온(2021)

**먹거리(영양)돌봄생태계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지역사회통합돌봄과 지속가능한 돌봄 생태계

◆ 지역사회통합돌봄

- 거동불편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살던 곳에서 삶의 질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역사회주도로 사람 중심의 통합적 돌봄체계 구축

◆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좋은 질의 사회적 돌봄서비스를 안심하고 충분히 누릴 수 있고 지속적인 안정적 공급이 가능하도록 서비스 체계 혁신을 통한 '지속가능한 사회적돌봄 생태계' 조성 필요

- ◆ 지속가능한 사회적 돌봄체계 구축을 위하여 사회적 입원 및 불필요한 시설입소 지양하고 지역사회 돌봄 충실화
 - **먹거리(영양)돌봄**은 지역사회생활 유지를 위한 중요한 돌봄

지속가능한 사회적돌봄 생태계

▪ 제도적 돌봄을 넘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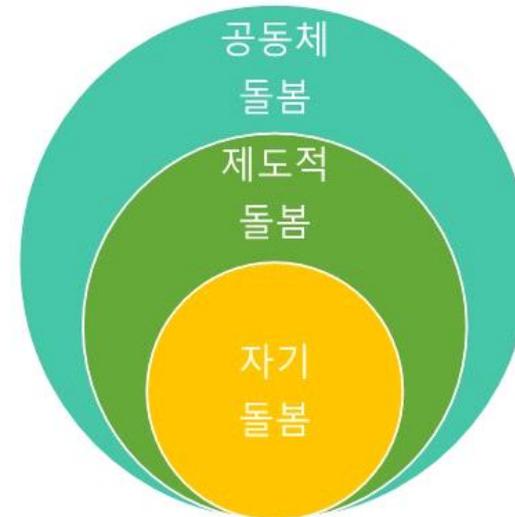
- 돌봄기본권 보장
- 안전한돌봄 보장
- 효과적 제도배열과 서비스이용체계

▪ 자기 돌봄의 강조

- 돌봄주체성의 회복
- 자기결정권, 자기효능감 지원

▪ 공동체 돌봄의 결합

- 함께 돌봄
- 지역사회외의 창발성



-
- ◆ **(책임돌봄과 지역돌봄기금)** 지역 격차 없도록 중앙 주도의 지역돌봄기금의 조성
금의 조성
과 함께 ICT 접목을 통한 지역사회통합돌봄 플랫폼 구축과 지자체 책임돌봄 및 민관 협력적 거버넌스 추진
 - ICT, IoT, AI, 로봇 등 지능정보기술과 전문인력 서비스 코디네이터 역할 결합한 서비스 통합 전달체계의 효율적 구축 및 서비스 질 제고

 - ◆ **(전문적 돌봄영역 다기화 및 생태계 조성)** 다양한 돌봄서비스 수요에 대응하여 공공서비스에 더하여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전문 사회서비스 영역 다기화 및 관련 생태계 조성 지원
 -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지역밀착 사회적 경제 비즈니스 생태계 조성
 - 사회적경제는 지역에서 쌓아 온 사회적 신뢰자본에 기반하여 공적제도 급여서비스, 추가적 시장서비스, 지역공동체 호혜적 서비스 등 다층적 사회서비스 제공주체로 역할 가능

-
- ◆ **(다층적 사회서비스 체계)** 다양한 돌봄서비스 수요에 대응하여 공적서비스에 더하여 개별적인 추가적 필요에 대응할 수 있는 여러 층위의 다양한 민간 사회서비스 개발을 지원하여 다층적 사회서비스 체계 구축
 - 다양한 수준의 수요에 대응하는 사회서비스 시장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 및 법제도 정비
 - 타임뱅크와 같은 지역공동체 기반의 호혜적 돌봄 조직화를 위한 여건 조성 및 법제도 정비

 - ◆ **(지역밀착 사회서비스 비즈니스 및 일자리)** 사회서비스 관련 지역밀착 사회적 경제 비즈니스와 관철은 지역일자리 창출
 - 공공일자리뿐만 아니라 기존 민간서비스 일자리 질 제고 및 전문 돌봄 생태계 조성으로 전문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 

지역사회통합돌봄과 먹거리(영양)돌봄 생태계

지속가능한 먹거리(영양)돌봄 생태계



- 지역사회통합돌봄과 먹거리(영양)돌봄 법제화
- 먹거리(영양)돌봄에 대한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사회적 지원체계 마련

지역사회 먹거리(영양)돌봄 법제화의 필요성

지역사회 먹거리돌봄 생태계 조성 및 제도화

◆ 먹거리돌봄의 중요성

- 먹거리돌봄은 건강관리와 돌봄의 기본
- 먹거리돌봄은 노쇠화 및 인지저하 속도 늦추는 데 기여
- 먹거리돌봄에 대한 실질적 체감 만족도, 삶의 질 향상 기여도 매우 높음

◆ 먹거리돌봄을 전문적 돌봄분야의 하나로 독자적 생태계 조성 가능 & 필요 “지역사회 먹거리돌봄 체계와 선순환 생태계 조성”

● 사회적 먹거리돌봄 재정 지원

- 먹거리돌봄, 영양급식(도시락 포함) 및 고령친화식품 구매를 위한 사회적 돌봄재정 지원

● 법체계 및 제도적 지원 체계 마련

- 먹거리돌봄, 영양급식 및 고령친화식품 지원법 마련
 - 지역사회통합돌봄법에 영양돌봄 지원내용 포함
- 먹거리돌봄, 영양급식 및 고령친화식품 관련 제도적 지원체계 마련

- (공동급식 생태계)

- 영양균형 및 개별적인 상태에 따른 맞춤식단 고려한 식단 계획
- 먹거리 생산자와 신뢰 기반 직거래를 통한 질 좋은 먹거리 원료 확보
- 안전하고 위생적인 조리
- 기관의 단체급식, 마을 공동식당, 도시락 배달

- (고령친화식품산업 생태계)

- 고령친화식품 기획
 - 고령친화식품 생산
 - 고령친화식품 유통
 - 고령친화식품 소비
- 

- ◆ **(법적 기반)** 지역사회통합돌봄법(안)에 통합돌봄의 주요 사업*으로 **먹거리 돌봄 사업을 법 조항으로 명기 필요**
 - 법령(시행령, 시행규칙)에 **단가, 자부담율, 식자재 조달에 대한 일반 기준** 설정 필요
- ◆ **(조례 제정)** 법제정 이후 지자체별 조례에 주요 사업*으로 먹거리 돌봄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명기하는 표준 조례(안) 확산 필요
 - (기준) 먹거리 돌봄을 위한 단가기준, 식자재 조달기준(원산지 등), 식품안전 관리기준, 영양기준, 먹거리 돌봄대상자를 위한 **섭식지도 등 체계적인 식생활 교육** 등
- ◆ **(식재료·영양 관리)** 식재료의 **조달체계나 품질관리, 식단 및 영양관리, 배달서비스 개편** 등 체계적인 대책 마련 필요
 - 서울시 고령 만성질환자 대상자별 만성질환식, 신장질환식, 저작곤란식 등 제공
- ◆ **(재원 마련)** 돌봄의 보편적인 접근성 보장과 정책의 안정적인 유지·확대를 위해 **지역사회통합돌봄기금 조성 및 소득별 차등 본인부담** 필요

감사합니다

seokje@hallym.ac.kr

지역사회 먹거리 돌봄 사례와 활성화 방안

1. 기본검토
2. 주요사례
3. 과제제안

황영모 연구위원
전북연구원



‘지역사회 먹거리 돌봄’ 사례와 활성화 방안



1. 기본검토
2. 주요사례
3. 과제제안

* 이 내용은 전북연구원이 수행중인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지역사회 먹거리 돌봄 활성화 방안 연구'의 일부입니다.

1

먹거리 돌봄

기본검토



1. '사회적 돌봄'의 의미

● '돌봄'에 관한 주요개념

- 돌봄(caring) : 돌봄을 받는 사람과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활동(개인,지역,사회,국가) (이현진, 2021)
- 수동적 개념 : 자신을 스스로 돌볼 수 없는 병자, 노인, 어린이를 대상으로 돌보는 행위 (Daly,2002)
- 능동적 개념 : 일상생활이 어려운 이들이 정상적·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지·지원하는 행위 (Sipila & Kroger, 2004)
- 현대적 돌봄 : 삶의 과정에서 보편적 욕구로서 포괄적인 시민권의 차원에서 삶의 독립성을 보장받는 개념 (김홍주, 2021)

● '사회적 돌봄' 주요내용

- 노인·장애인·아동·청소년 등의 질병·건강·복지 돌봄의 복합 욕구가 높음 → 지역사회돌봄 관점 수요 증가 (Bouit et al, 2008)
- 표준적 서비스 제공(방식)은 지역사회 연대가 낮아 개인이 지역사회로부터 이탈 → 돌봄 활동은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분야의 통합적 서비스가 요구, 유연하고 수요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위해 주체 간 사회적 관계성 강조 (김용득, 2018; 이현진, 2021)
- 돌봄의 '사회화' : 개인·가족 돌봄 책임을 사회로 넓히고 재정지원을 넘는 지역사회 역량으로 인식 → '사회적 돌봄' (Daly & Lewis, 2000)
- 돌봄 서비스·정책은 '잔여·시혜·특수적' 차원이 아니라 보편적 복지와 시민권 차원에서 접근이 필요 (Daly & Lewis, 2000)

구 분	복지 국가의 관점	돌봄 사회화의 관점
주체 (실전기반)	복지 국가적 개념화 → 정부의 역할 강조	시민사회적 개념화 → 시민참여가 기반
관계 (대상관계)	국가 중심 공공성 논의 → 공급자-수혜자 이원화	돌봄 공공성 논의 → 공급자-수혜자 동일시
자원 (활용자원)	국가 중심 사회서비스 → 정부 지원 민간위탁 서비스	돌봄 공공성 논의 → 지역사회 중심 연대와 네트워크

자료 : 김홍주 (2021); 이현진(2021)에서 정리

2. '먹거리 돌봄'의 의미

● '먹거리 돌봄'의 의미

- 먹거리 돌봄의 의미 : 시혜·자선 차원의 선별적 식품제공(food charity) 아닌 보편적인 인권 차원의 먹거리 보장(food security & sovereignty)으로 전환하는 것(김홍주, 2021; UN CESCR, 1999)
- 먹거리 돌봄의 근거 : 헌법(10조,34조,37조), 보건의료기본법(10조), 국민건강증진법(2조,3조,6조,15조,19조), 국민건강영양관리법(2조,3조,10조,1조) 등
- 먹거리 돌봄의 형태 : 먹거리 취약계층과 지역주민 모두에게 양적으로 충분하고, 질적으로 적절한 식사를 제공하는 것
- 먹거리 돌봄의 방식 : 식품지원 활동이 지역사회 서비스와 연계·통합될 때 시너지 효과 있음 확인(지역사회조직 연계)
- 식품지원+사회서비스 결합 : 독거노인(식사+간병+말벗 등 돌봄 서비스), 저소득층(의료서비스+영양·보충식품 제공), 실업자(무료급식+일자리 정보 제공), 학교 밖 청소년(급식+교육서비스 등 정서 지원)

● '먹거리 돌봄'의 시각

- '지역사회통합돌봄' 관점 : 여러 사유로 자립적 생활 영위가 어려운 사람을 지원, 먹거리 돌봄은 세부 정책수단의 하나
 - » 먹거리 불안이 개인차원에서 발생하고, 생애주기 특정기간에 나타나며, 영구적으로 취약한 상태로 파악하여 다양한 지원수단을 통합하여 제공하는 방향으로 정책내용을 구성 (이인우, 2021)
- '지역 먹거리 체계' 관점 : 영양 불균형으로 대표되는 먹거리 불안에 처하지 않도록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 영역
 - » 먹거리 기본권 관점을 견지, 먹거리 불안은 관행적 먹거리 체계에 있으므로 지역 내 먹거리 순환체제로 보완해야 함 강조, 먹거리 불안이 가족 단위 발생, 일시적 누구나 불균형 상태이므로 생활 통합적 방향으로 추진 (이인우, 2021)

2

먹거리 돌봄

주요사례



1. 서귀포시, 지역사회통합돌봄 '혼디거념'

● 어르신 토탈케어 中 '식사배달'

- 어르신토탈케어 서비스 :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에게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재가사회서비스(가사,이동,식사,목욕)를 제공
- 지원대상 : 지역사회통합돌봄 정책 대상자 중 거동불편, 질환 등으로 독립적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워 지원 필요한 노인
- 식사지원 : 월 62식 (1일 2식*6천원, 월평균 120명 지원, 1식 6천원 중 2천원은 운영비로 사용)
- 수행기관 : 예담재가복지센터
- 식사인력 : 주방(조리) 3명, 배달 3명
- 식단구성 : 동일 법인 내 요양원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 활용



● 커뮤니티키친 사업

- 사업목적 : 어르신 영양상태 개선 위한 다양한 조리법을 배우고, 요리를 매개로 주변 이웃들과 공유하며 소통하는 기회
- 지원대상 : 통합돌봄 대상자 중 영양결핍 우려로 식생활 개선이 필요하거나 사회활동 지원이 필요한 어르신
- 운영내용 : 제철·지역 농산물 조리법 강의와 영양교육(부녀회와 협업체 등 지역자원 활용), 영상활용 온라인 프로그램 진행
- 수행기관 : 권역별 종합사회복지관 3개소 (지역특성에 맞는 방식으로 다변화된 운영방식 적용)

구분	지역특성	운영방법	특이사항
1권역 (대정~중문)	읍면지역, 이동불편, 돌봄자원부족	지역별 소그룹(5인이하) 운영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협업 (감사,장소,지역연계 등)
2권역 (대천~효돈)	동지역, 교통편리, 돌봄자원집중	노인복지관 활용 8~10명 그룹, 전문강사	타 권역보다 어르신 참여가 적극적
3권역 (남원~성산)	읍면지역, 이동불편, 돌봄자원부족	개인별+소그룹 병합운영	새마을부녀회지원, 어르신 1인+부녀회원 동네별 소그룹 운영



2. 부산시 진구, 건강한 밥상 ‘온마을 사랑채



● 사업내용

- 이용대상 : 부산시 진구 거주 만 65세 이상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정책대상 중 건강·영양관리가 필요한 자 159명^(21.9기준)
- 이용금액 : 월 200,000원(1식 8,000원), 점심식사+ 오전·오후 간식 제공
- 특기사항 : 지역사회서비스 사업과 연계(본인 부담금 4~10만원) / 소득수준별 본인부담금 상이(100% 지불도 있음)
- 제공서비스 : 영양관리(월 1회) + 식사지원(월 24회, 주 6회 월~토요일)
- 제공방법 : 회합식 식당배식 및 거점·개별 배송 / 코로나로 인해 전면 도시락 배달 중(방문포장, 거점 배달, 가정 배달)
- 제공인력 : 22명(필수 6명- 센터장·영양관리영양사·급식영양사·사무장·조리사·조리원, 보조 20명- 포장·배달)
- 소요예산 : 315백만원(운영비 200백만원, 배송지원 115백만원, 국비 50%, 시비 40%, 구비 10%)
- 운영기관 : 동의과학대학교 산학협력단, 지역사회통합돌봄식사서비스지원센터(학교기업)
- 운영내용 : 신체 건강·영양상태 파악 맞춤형 식사제공, 영양상담·교육, 모니터링, 건강한 식생활교육 프로그램 운영 재가노인 개인별 식습관, 신체 및 질병상태, 구강건강(저작·연하) 등 데이터 바탕, 영양관리 전담 영양사에 의한 개인 맞춤형 식단처방과 지속적 건강 가이드 제공 (식자재납품-풀무원푸드머스, 식사배송-부산진자활센터)

[주체별 역할]

주체(기관/단체)	주요역할	주체(기관/단체)	주요역할
부산광역시	운영 예산지원	부산진자활센터	배달
부산시 진구	사업총괄, 운영지원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단 운영
동의과학대학교	커뮤니티키친 모델 개발, 운영 플랫폼 구축	엔젤편(주)	플랫폼 구축
(주)푸드머스	식자재 공급, 신매뉴개발, 고령친화식품 개발		

[식당 배식]



[도시락 배달]



3. 부산시 북구, ‘공유공간 먹거리 돌봄’

● ‘새뜨락커뮤니티센터’, 지역주민 중심 밥상공동체

- 새뜰마을(북구 구포2동) 내 지역주민을 위한 공유공간 ‘새뜨락커뮤니티센터’ 마련
- 주민중심의 새뜰마을공동체가 주민교육 및 회의, 문화여가 프로그램 등 운영 시작
- 혼자 식사해결이 어려운 분을 위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밥상공동체를 만들게 됨
- 주 1회 30여명 어르신을 위해 주민들이 직접 식자재 준비, 음식 조리, 식사 준비
- 코로나19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도시락을 만들어 가정으로 전달해서 안부를 확인



● ‘만덕어울락樂’, 어르신 당사자-돌봄활동가 중심

- 2020년 11월, 어르신을 위한 공유공간으로 ‘만덕어울락’ 공간을 조성(북구 만덕2동)
-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돌봄활동가 상주, 공유카페 운영, 건강·문화예술 프로그램 진행
- 공유공간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어르신들의 식사해결에 대한 욕구가 많은 것을 확인
- 돌봄 활동가와 어르신이 함께 음식을 만들어 먹는 밥상공동체 ‘어울리는 한끼’를 구성
- 남성 어르신이 많아 밀키트나 간단한 레시피 활용, 음식을 조리하고 만드는 법을 배움
- 코로나19 상황에서 음식을 이웃에 가져다 주며 스스로 먹거리 돌봄과 이웃 돌봄 실천



- 지역사회통합돌봄 공유공간 먹거리 돌봄사업, 사회적경제 조직이 권역을 나누어 먹거리 돌봄 서비스 주체로 역할 수행
- ‘어르신 영양 보드미’ 서비스(미더덕협동조합,부산소비자생활협동조합), ‘돌봄 채움’ 서비스(북구지역자활센터, 희망터지역자활센터)

4. 부천시, 먹거리 돌봄 '마을부엌'

● 추진방식

- '18~'20년, 마을 협동조합 '소란' 주체, 부천시 마을공동체사업(공모)으로 식생활교육과 먹거리 나눔 등 공동부엌 운영
- 공동체 텃밭 운영, 지역사회복지관/청년주택/노인복지관 등과 함께 식생활 강좌와 실습 나눔
- 경기도의 '마을부엌' 공모사업을 '부천시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마을협동조합 소란'이 공동으로 준비하여 신청
- 커뮤니티키친(마을부엌) 공간 조성을 통해 먹거리 돌봄 활동(프로그램)의 거점을 탄탄히 갖춰 나가고 있음

● 사업내용

- 식생활 교육 : 지역 어르신 지역아동센터, 가정이탈 청소년, 임산부, 독거 청년, 장애인 그룹홈 등
- 취약계층 먹거리 지원 : 독거 어르신(행정복지센터 연계), 장애인 가정, 독거 가정, 가정이탈 청소년 등
- 마을공동체 먹거리 나눔 : 마을장독대(대안학교), 공동체텃밭, 이웃들과 끼니나눔, 친환경 반찬 나눔 등
- '공유부엌'은 먹거리를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진화하는 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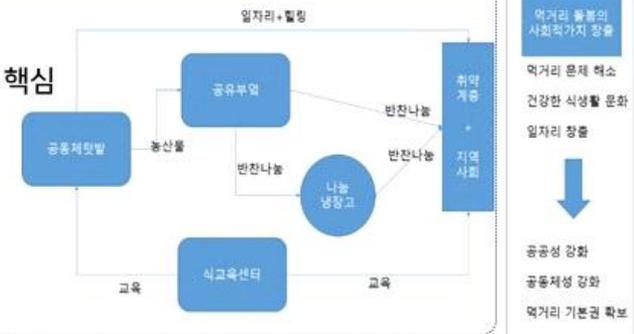
"이웃의 끼니 걱정" → 홀로 사는 어르신 한끼를 마을부엌에서 나눔
 "지역아동센터 아이들 건강 먹거리" → 아이들과 건강 먹거리 탐구
 "청년들의 먹거리 걱정" → 청년주거협동조합/이웃청년 밀키트 배송
 "장애 청년의 먹거리" → 스스로 먹거리 자립할 수 있게 식생활 교육
 "가정 밖 아이들" → 실패 청년들과 마을부엌에서 생일잔치 관계망



5. 한살림제주, '먹거리 돌봄' 지역살림

● 추진방식

- 한살림제주의 지역 먹거리 체계 전환을 위한 플랫폼 구축
- 푸드플랜은 생명살림을 바탕으로 농업살림, 지역살림을 강조하는 한살림 정신의 핵심
- 먹거리 체계에서 생산~가공~유통~소비를 넘어 폐기와 '돌봄'까지 고려
- 한살림제주, 사업방식
 - 건강한 먹거리 공급 (수놓음자활센터, 한살림 담을센터)
 - 가까운 먹거리 체계 구축 (영농회사법인 밥상살림)
 - 협동조합 지역사회 만들기 (한살림제주 모심회)



● 사업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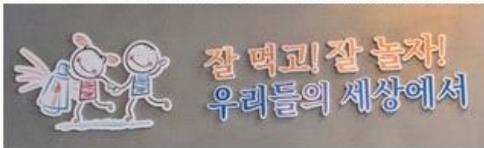
- 제주소통협력센터의 지원협력으로 2020 지역문제해결을 위한 '먹거리 돌봄' 리빙랩을 실행
- 노형동주민센터(솜뽕살레 공유냉장고) + 주민자치위원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협력(제주사회복지협의회 푸드뱅크와 협력기관 확대 예정) (솜뽕='가득', 살레='부엌의 수납공간'이라는 뜻)
- '솜뽕살레 공유냉장고'는 자발적 나눔을 실천하고 행복한 마을을 위해 건강한 먹거리와 물품을 나누는 공간(월 150명)
- 초기에는 공유냉장고의 이용 먹거리 유효기간을 우려했으나, 이용 활성화로 먹거리가 부족해서 물품 보충에 대해 고민



6. 익산시, 청소년 자립 '청년식당'

● 사업내용

- 운영목적 : 청년식당을 통한 취약계층 청소년 욕구와 특성에 부합하는 일자리를 지원하고, 사회적기업가 등으로 육성
- 추진배경 : 시설 퇴소 청소년들의 자기 주도적이고 의지를 일깨워줄 시설이 부족한 문제에 대응
학교 밖 청소년들이 꿈을 키울 수 있도록 경제교육과 직업훈련도 진행
- 운영방식 : 사회적협동조합 '청소년자립학교' 운영(국내 최초), 사회적경제조직을 활용한 청소년 자립 모델
- 지원대상 : 취약계층 청소년 19~24세 / 전라북도 협동조합 대상' 수상 (21.10)
전국 6호처분 위탁시설, 청소년 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서 청년식당 모델에 적합한 아이들을 연결
총괄 매니저와 원광대 사회적경제연구센터가 함께 청소년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
- 지역연계 : 수익금의 일부 사회환원, 지역에서 생산된 친환경쌀 등 농산물, 지역주민이 담근 장류 등 활용
- 무료급식 : 시민단체 주도 '0819 청년도시락' 캠페인 (지역의 8~19세 청소년 대상 무료 도시락 제공)
 - 매주 월~금 오후 3시 신청, 선착순 10명에게 다음날 점심시간 집으로 배달(주말 제외)
 - 사회적기업 '청년식당'(무료 도시락 제공) + 스타트업 기업 '배달아울렛'(무료배달) + 지역사회단체 'Like익산포럼'(홍보)
- 상생협력 : SK E&S 상생협력사업, 지역의 아동과 청소년 먹거리 지원사업을 위해 세대공감 및 교류 사업 시작
 - 푸르덴셜생명 지정기탁으로 청년식당 2호점, 3호점 개소
 - 지역대학교 상생모델 : 원광대학교 내 청년식당 지점 운영



7. 남해군, 농촌마을 '공동체 마을부엌'

추진목적

- 농번기 가사와 농업을 병행하는 여성농업인의 영농 중단을 예방하고, 농업 생산성과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2009년부터 현재까지 마을공동 급식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사업내용

- 지원대상 : 농작업 수요가 많은 마을 중에서 조리시설이 갖추어져 있고 20명 이상 공동급식이 가능한 농촌마을
- 사업내용 : 시군이 지정 농촌마을에 공동급식 조리원 인건비와 부식비 일부 지원
- 지원확대 : 코로나19로 농촌마을 회관 조리가 불가 상황을 고려하여 인근식당을 이용하고 도시락 배달 이용 계획(마을별 신청 사업비 내 집행 가능)
- 운영기간: 농촌마을별로 주요 재배작물 등 영농일정에 따라 공동급식 운영기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마을주민의 높은 수요
- 기대효과 : 지원내용을 지역식당과 도시락으로 확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
- 지원기준 : 공동급식일수(25일)와 급식 인원수(20명 이상)는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으나, 1일 식비 8,000원, 간식 구매는 불가



8. 뉴욕시, 'Citymeals on wheels'



● 식사제공 (Meal Programs)

- 주말 식사 : 매주 토·일 직접 배달(노인 대상 정부지원 식사, 주중 제공), 코로나19로 2천명 증가, '20년 총 167만 여끼 제공
- 휴일 식사 : 공휴일은 혼자 살거나 고립된 노인에게 어려운 날, 공휴일에 즐기는 특별식사 직접 배달, 코로나19 이전은 센터로 불러 특별행사 진행 (코로나19로 중단)
- 휴일 꾸러미 : 연휴 동안 식사 챙기지 못할 노인을 위한 꾸러미, 오랜 기간 보관 가능한 식품들로 구성, 보통 3끼 식사를 기본으로 구성, ('20년) 28.4만여끼 제공
- 비상 식사 : 정전·자연재해 등 정기배달 지연 경우, 상온 보관 가능 2끼 식사 가방에 넣어 배달, ('20년)55.4만여끼 배달
- 비상 식품 꾸러미 : 혹독한 겨울 날씨 대비 오랜 기간 보관이 가능한 음식이 포함된 꾸러미를 배달(통조림, 가공식품 등)
- 이동 푸드 팬트리 : 걷기 힘든 노인 위해 운영, 먹거리 불안 높은 지역(부룩클린 등) 푸드 팬트리·자원봉사 조직과 공동
- 식사 수령자 57%가 독거 노인 (40% 단 한 번도 집 떠난 적 없음, 8%는 주변과 대화를 나눌 사람이 없는 대상)

● 자원봉사 (Volunteer Programs)

- 식사 배달 : 노인복지관 중심으로 도보 거리 이내에는 직접 걸어서 식사 배달
- 친절 방문 : 신원 확인이 된 자원봉사자 중 교육 통해 정서적 친교 맺도록 연결
- 수기 카드 : 학생·지역단체 참여, 생일·휴일 발송, 유치원~대학교 수백명 참여
- 노인 대화 : 매주 노인들과 전화 통화
- 주방 도우미 : 지역 노인복지관에서 식사를 포장하거나 서빙하는 업무를 지원



- 미국 첫 공공-민간 파트너십 조직('82년), 독립 비영리단체, 뉴욕시 노인 '식사 프로그램과 자원봉사 프로그램, 노인돌봄 사업'

9. 먹거리 돌봄 사례, 종합논의

● 지역사회통합돌봄 內 먹거리 돌봄 효과 확인

- 제주 서귀포시(혼디거넴), 부산 북구(만덕어울락, 새뜨락커뮤니티센터), 부산 진구(온마을사랑채) 등을 통해 지역사회통합 돌봄 시스템에 먹거리 돌봄이 결합되면, 돌봄 서비스의 만족도와 서비스 효과의 시너지가 높아진 것을 확인
- 지역 먹거리 돌봄 조직자원(공동체+사회적경제 조직)이 공유공간(커뮤니티키친) 갖춰, 식사배달·영양관리·식교육 등 담당
- 식사조리·배달 등 먹거리 돌봄 서비스 제공하는데 있어 식자재 단가, 배달인력 비용, 맞춤형 식사조리역량 등이 과제

● 공동체 돌봄과 먹거리 돌봄 대상 확대에 주목

- 서울시(마을부엌), 부산시(커뮤니티키친), 부천시(마을부엌), 남해군(마을공동급식) 등은 마을 공동체 부엌으로 지역사회 먹거리 돌봄을 실천하고 있음
- 익산시(청년식당), 전주시(엄마의 밥상) 등은 먹거리 돌봄 대상을 고령자를 중심으로 학교 밖 청소년 등 일시적인 취약 계층으로 먹거리 돌봄 서비스를 확장해 나갈 필요성을 시사

● 사회적 영향 확대와 지역사회 추진체계 강조

- 선한 영향력 가게는 먹거리 나눔을 통해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먹거리 제공 거점 확산 필요를 보여줌
- 대전 동구(나눔냉장고, 채움가게), 외국(푸드쉐어링, 뉴욕시) 등의 사례는 먹거리 나눔 거점이 지역사회 곳곳에서 이뤄질 수 있으며, 확산을 위한 지역사회 조직이 역량을 갖추고, 정보제공을 위한 기술 마련 등이 필요함을 시사
- 지역사회 먹거리 돌봄은 사회혁신(한살림제주)과 지역사회 복지전달 체계(보장협의체)와 결합된 통합 추진체계 필요 강조

3

먹거리 돌봄 활성화
과제제안



1. 먹거리 돌봄 지원 법률 근거 마련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개정안 의결('21.12.3)

● 농업·농촌식품산업기본법, 취약계층 식품지원 근거 활용

- 생애주기별 먹거리 돌봄 사업의 주된 근거가 되는 '국민건강증진법, 국민영양관리법' 등에는 지역 먹거리 지원 규정 부재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의 개정을 통해 취약계층의 식품지원 근거 마련
- 취약계층 식품지원 근거 : "제23조의2(취약계층 등에 대한 식품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취약계층 등 모든 국민에게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식품지원 정책을 세우고 시행해야 한다."
- 기본법 개정에 따라 '식품지원, 지역 먹거리 공급 등'과 관련한 관계 법률(시행령)의 조정사항 검토, 지자체 조례 개정 추진

● 지역사회통합돌봄법 제정으로 먹거리 돌봄 서비스 근거 마련

- 입법추진 중인 '지역사회통합돌봄법(안)'에 통합돌봄 주요사업으로 먹거리 돌봄 관련 사업추진 조항 반영으로 근거 마련
- 법률(안) 검토-'정춘숙 의원' 대표 발의 '지역사회통합돌봄법(안)'을 토대로 검토 (참고-전재수 의원 대표 발의안)



- '먹거리 돌봄' 지역사회통합돌봄의 '독립영역'으로 추가 (기존) 3개 영역 : 소득보장, 건강/의료보장, 돌봄보장
'식사배달'은 돌봄보장 중 '재가서비스' 하위 (개선) 4개 영역 : '먹거리 돌봄' 추가 (식사배달, 영양배달, 식생활교육 등)

* 특기사항 : 이에 대한 세부내용은 '지역사회통합돌봄-먹거리 돌봄 강화' 프로그램 제안(**쪽)에서 다룸

2. 먹거리 돌봄 활성화 프로그램 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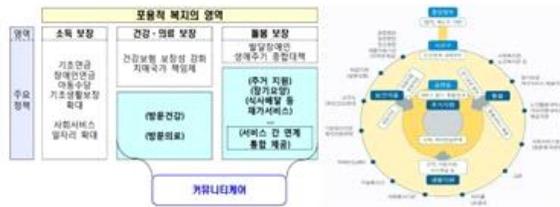
['먹거리 돌봄 활성화 프로그램' 제안내용]

진단과 방향	대응과제	활성화 프로그램(안)	추진 근거	관련부처
'융합'을 실현	지역사회 '돌봄에 먹거리'를 융합	(1) 지역사회통합돌봄, 먹거리 돌봄 강화	법률제정, 조례제정, 표준모델	복지부 (농식품부, 행안부)
		(2)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활용 추진	정책활용, 활동촉진, 지원활동	복지부, 지자체
'고립'을 연결	'마을단위 공동밥상' 먹거리 돌봄	(3) 커뮤니티 키친(공유부엌) 구축 확대	정책활용, 지침개선	국토부, 농식품부
'결핍'을 보완	'지역먹거리'를 통한 먹거리 돌봄	(4) 먹거리 돌봄 식재료 조달 방식 개선	법률개정, 정책개선	농식품부
'체계'를 구축	지역먹거리 돌봄 '실행체계' 구축	(5) 지역사회 먹거리 돌봄 추진체계 구축	법률근거, 조례제정	복지부, 지자체

(1) 지역사회통합돌봄, 먹거리 돌봄 강화

● 지역사회통합돌봄 사업개요

-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가 본인이 살던 지역사회에서 본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통합적 지원 정책 마련
- '지역사회통합돌봄 기본계획' 수립('18.11) 이후 '19년 선도사업(복지부-16개 지자체), 시범사업(행안부-2개 지자체)



- 돌봄이 필요한 주민(노인·장애인 등)이 살던 곳(본인집·그룹홈 등)에서 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살아가도록 주거·보건의료·요양·돌봄·독립생활 지원이 통합 확보되는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 정책
- 사업대상 : 전체 노인의 약 15~20% 추정
- 사업내용 : 주거지원, 방문형 보건의료·건강·방문요양, 생활지원서비스 확충 등 재가 자립 생활 기반 마련

● 지역사회통합돌봄 내 먹거리 돌봄 관련 서비스

- 먹거리 돌봄 서비스는 돌봄 대상자의 건강관리 및 삶의 질과 직결된 서비스, 통합돌봄 비전에서 '요양돌봄' 내에 '식사 배달 등 다양한 신규 재가 서비스'로 제시
- 사업지역 : 부산 진구(온마을사랑채, 돌봄채움, 어르신 영양 보드미), 부산 북구(만덕어울락, 새뜨락커뮤니티센터), 서귀포 (혼디거넴), 춘천시(노인돌봄 식생활 서비스) 등
- 제공 서비스 : 도시락과 반찬 배달이 다수로 방문배달 등을 통해 대상자 관리, 커뮤니티 키친(부산 진구, 서귀포시) 형태 도 있으나 코로나19로 배달 서비스로 전환
- 제공기관 : 사회복지기관(사회복지법인, 자활센터 등), 사회적경제조직(소비자생협, 협동조합 등)이 담당(필요기준 충족)

(1) 지역사회통합돌봄, 먹거리 돌봄 강화

● 먹거리 돌봄 관련 서비스 모니터링

- 사업 만족도 : (채소)사전(2.64)→사후(3.55), (과일)사전(2.52)→사후(3.00), (식생활 형편)사전(2.44)→사후(2.66) 개선
- 현장에서 선호도가 높은 서비스, 돌봄 대상자의 건강상태 호전이 확인, 계획 대비 높은 수요(춘천시, 목표대비 86% 초과)
- 주관적 건강상태 개선(매우/약간 나쁨) : (사전)84%→(사후)45%, 3식 섭취 빈도 증가, 식품 다양성 확보(부산 진구 사례)
- 제공기관(사회복지기관에 의존, 조리실과 필수인력을 갖춘 조직 한계), 서비스(식사배달에 그침, 영양관리와 관계맺기 미흡), 제공비용(지역별 편차), 식자재 조달(지역 농산물 낮음) 등

● 먹거리 돌봄 관련 서비스 애로사항

-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 대상자 만족도가 높은 반면, 공급자 중심의 사업진행으로 수요자 욕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한계 (대상자 맞춤형 일반식·치료식 등의 식단 제공에 한계, 영양 진단에 따른 영양 중재와 모니터링이 부족)
- 지역별 식단가(1식)가 차이가 있고, 운영비(인건비, 배달비 등)를 제외하면, 양질의 식재료 구매를 하기에는 제약이 큼 (부천시 8,300원-식재료 55%, 부산 사랑채 8,000원-식재료 60%, 서귀포 6,000원-식재료 67%)
- 식사배달 배송비 등의 예산 제약으로 지속적인 배달 서비스 제공의 어려움과 배송 주기(1일 1회, 주말 불가 등) 불안정
- 시범사업으로 관련 중앙 부처(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등)간 업무협조 체계와 지자체 내 부서협업 부족
- 시범사업으로 지역실정에 따라 제공 서비스 수준에 차이가 있음(식단가 기준, 식자재 조달 기준, 영양·안전 관리기준, 대상자 식생활 교육 제공 등)
- 지역사회에서 생산된 건강한 식재료 활용(지역 농산물 등)과 대상자별 맞춤형 식사제공을 위한 예산 확보 방안이 필요

(1) 지역사회통합돌봄, 먹거리 돌봄 강화

● 먹거리 돌봄, 법률 제정에 근거 마련

① 법률 : 지역사회통합돌봄 법률(안)에 '먹거리 돌봄 사업' 근거 마련

- 입법추진 중인 '지역사회통합돌봄법(안)'에 통합돌봄 주요사업으로 먹거리 돌봄 관련 사업추진 조항 반영으로 근거 마련
- 법률(안) 검토-'정춘숙 의원' 대표 발의 '지역사회통합돌봄법(안)'을 토대로 검토 (참고-전재수 의원 대표 발의안)

[반영조항(안)]

- 제7조(지역사회 보건의료 등 지원)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에서 통합 돌봄 대상자에게 욕구와 필요에 맞는 통합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생략) 1. 2. 3. 4.

5. 통합돌봄 지원 대상자의 건강 유지를 위한 식사배달, 영양관리, 식생활 교육 등 먹거리 돌봄 서비스 (추가)

② 조례 : 지역사회통합돌봄 조례(안)에 '먹거리 돌봄 사업' 구체화 반영

- '지역사회통합돌봄 법률' 제정 이후 지자체(시도, 시군구) 조례에 먹거리 돌봄 활성화 위한 구체적 기준 반영 → 표준(안)

[검토사항]

- (지원대상) 먹거리 돌봄 등 식생활 지원 서비스 제공 대상자
- (제공 서비스) 식사배달, 영양관리, 식생활/조리교육, 먹거리 연계 사회활동 등
- (제공기관) 조리시설을 갖춘 지역사회 복지시설, 사회적경제 조직, 먹거리지원센터, 식생활교육기관 등
- (식재료·영양) 식재료 조달체계 및 품질관리 기준, 질환별 표준식단 제공 및 영양관리 기준 등
- (재원마련) 먹거리 돌봄의 보편적 접근성 보장과 정책의 안정적 유지·확대를 위한 소득수준별 차등 부담 등

(1) 지역사회통합돌봄, 먹거리 돌봄 강화

● 먹거리 돌봄, 서비스 기준 표준화

- 선도/시범사업의 모니터링·애로사항 등을 반영하여 식사 돌봄 서비스 개선을 위한 '표준모델(안)'을 마련하여 개선

구분	주요내용	구분	주요내용
이용자	시군별 월평균 **~**명 수준	식사제공	· 주 6회 도시락 배달(개인/거점) · 1일 *식, 간식 · 커뮤니티키친 방문 식사 · 토요일(반조리, 조리식품 구성 제공)
대상자	· 요양병원 장기입원 후 지역복귀자 · 단기입원 후 지역복귀자 · 75세 도래자 및 고위험군(선제개입) · 통합돌봄 대상자 중 건강유지 필요 또는 만성질환군 · 거동불편, 만성질환 등 식사준비가 어려운 돌봄필요 노인 · 돌봄 사각지대 대상자	식사종류	· 일반식(저당, 저염, 잡곡 제공) · 연식/유동식(저적온란식) · 치료식(당뇨식, 고혈압식, 당뇨+고혈압식)
서비스가격	· 월 20만원 이상 (자부담) · 기초수급자/차상위 계층(4만원) · 중위소득 120% 이하(6만원) · 중위소득 160% 이상(8만원)	식사포장	· 개별 포장(재활용 친환경 포장용기) · 가방은 보온보냉백에 담아서 배달
지원방식	· 바우처	식단가	· 1끼당 **천원(재료비60%, 인건비 35%, 경비 5%)
서비스내용	· 사전검사 · 식사지원(주6회) · 영양관리(월1회) · 공동식사	지원인력	· (필수) 영양사 1 · 조리사 2 · 배송기사2
제공기관	· 지역사회복지기관/사회적경제조직 (조리시설 갖춘 조직) · 배달 등은 지역사회조직(봉사, 배달 등) 연계	식단구성	· 표준 식단을 준용한 영양사 비용
		재료조달	· 지역 식재료 조달(푸드통합지원센터 등)
		정보제공	· 혈당/혈압 등 만성질환 식사조절 교육자료 · 먹거리 제작 레시피 · 식사구성 및 섭취방법 안내서
		영양관리	· 영양 스크리닝 · 식사 모니터링 · 영양교육 · 영양상담 (월 1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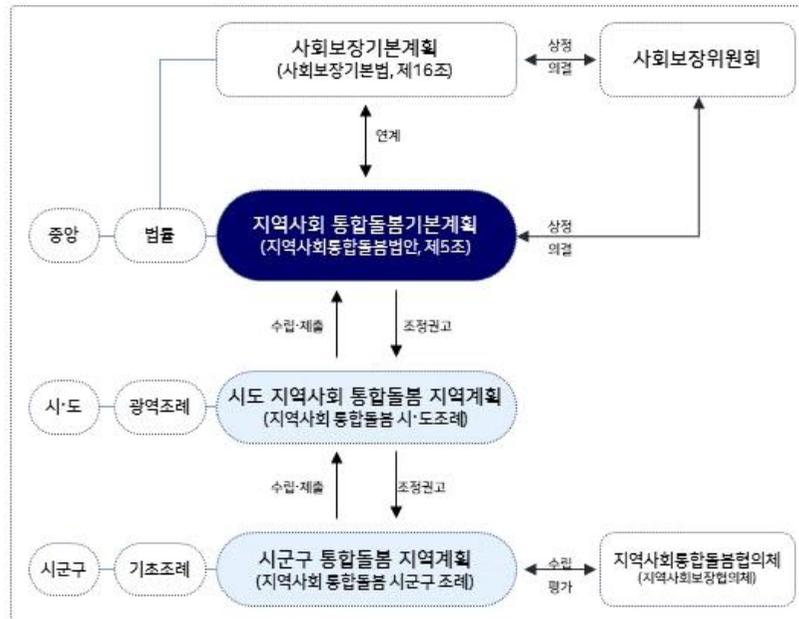
[서비스 절차]

- 대상자 맞춤 서비스 (사전관리 및 영양관리)
사전검사(영양판정, 초기 1회)→영양관리 1(영양진단, 월 2회)→영양관리 2(영양중재, 월 1회/상시)→영양관리 3(모니터링/평가)
- 식사 서비스 지원 (주 6회, 1일 *식, 간식 등)
일반식/치료식 → 개인요구 · 주의사항 고려 → 식당배달 · 도시락배달 ← 상시 프로그램 운영 (교육프로그램, 이벤트 등)

(1) 지역사회통합돌봄, 먹거리 돌봄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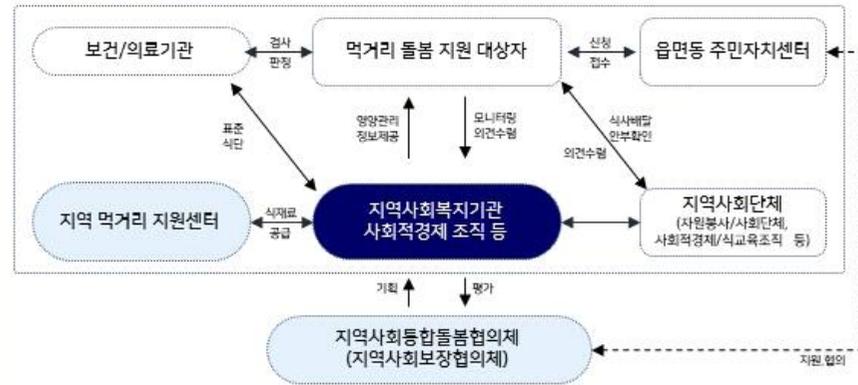
[참고] 지역사회돌봄 추진체계 및 먹거리 돌봄 서비스 전달체계 구상

[지역사회통합돌봄 법률(안)에 따른 추진체계]



* 자료 : 신권필(2020), '지역사회통합돌봄법 제정 의의와 주요 쟁점', 지역사회통합돌봄 2025 비전포럼에서 수정

[지역사회 '먹거리 돌봄' 서비스 전달체계]



(2)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먹거리 돌봄 확대

● 추진배경

- 보건복지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지원사업'을 활용,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먹거리 돌봄으로 발굴해 지원
- 지자체가 지역수요 맞는 사회서비스 제공 프로그램으로 '먹거리 돌봄' 발굴 추진, 서비스 제공 위해 지원·컨설팅 필요

● 추진방안

- 대표사례 : 부산광역시 진구 '식사영양관리 서비스', 전라북도 '식생활 교육(영양관리·조리·나눔) 프로그램' 등
- 추진방안 : 지원기관(시도 지역사회서비스 지원단)을 통해 시도별 먹거리 돌봄 제공 프로그램 기획·신청 과정을 컨설팅
- 프로그램 선정 과정 : 시군구가 제공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공모하면 광역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선정
- 제공기관 : 시도별로 '먹거리 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할 기관으로 지역사회 관련 조직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서비스 프로그램 준비를 위한 교육·컨설팅 지원 (시도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시군구 공동)
- 추진방향 : 지역사회 취약계층의 식사지원 및 영양관리 서비스를 통해 건강한 식생활 유지와 영양상태 개선으로 건강한 생활을 하도록 지원
- 제공 프로그램(예시) : 취약계층 식사배달 서비스, 바른식생활교육(임산부, 취약계층, 고령자 등), 어린이농부 텃밭학교(유치원, 어린이집) 등
- 검토사항 : 식사배달 서비스 등은 보건복지부 표준모델 적용 (대상기준, 제공기관 자격, 서비스 기준 등)

(2)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먹거리 돌봄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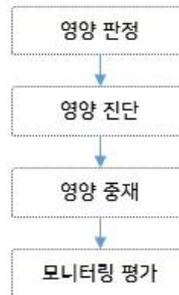
● 사례, 부산 진구 식사영양관리 서비스

- 사업목적 : 고령·만성질환 등 스스로 식사 준비가 어려운 통합돌봄대상자(노인)가 식사지원 및 영양관리 서비스를 통해 건강한 식생활 유지와 영양상태 개선으로 건강한 자립생활을 하도록 지원
- 대상기준 : 기준 중위소득 160% 이하(등급별 소득기준 상이), 만 65세 이상, 돌봐줄 가족이 부재하여 식사준비 어려운 노인
- 서비스 유형 : 재가방문서비스(재가방문형) 원칙, 시설기준(식품위생법 상 영업자/집단급식소, 사회서비스이용권리법률의 등록기관)
- 필수인력 : 영양사, 임상영양사, 식품·영양학 전공자(요건 충족)
- 서비스 내용 : 식사지원(주 6회-월 24회, 1식+간식 2회), 영양관리 서비스(월 1회-상시)

[식사지원] (사전검사 결과 기반 맞춤형 제공)

종류	구성	형태 및 주의사항	제공유형
일반식	저염, 저당, 소화용이, 다양한 식품군 구성	밥의 형태	식당 배식 도시락 배달
		반찬의 크기, 익힘 정도	
치료식	당뇨식, 만성신부전식, 연하장애식 등 질환이 확인되고 식사요법이 필요하다고 의사가 진단한 경우	알레르기원 식품	
		약물로 인한 금지 식품	

[영양관리 서비스]



[서비스 가격]

- * 1등급 : 본인부담 월 2만원, 정부지원 월 18만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가족)
- * 2등급 : 본인부담 월 4만원, 정부지원 월 16만원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 3등급 : 본인부담 월 6만원, 정부지원 월 14만원 (기준중위소득 120%~160%)

(2)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먹거리 돌봄 확대

[참고]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개요

● 기본개요

- 사업목적 : 중앙정부의 전국 대상 일괄 실시 국가 주도형 서비스 제공방식에서 탈피, 지자체가 지역별·가구별로 다양한 특성·수요에 부합하는 차별적인 서비스(mass customized services)를 주도적으로 발굴·집행, 체감·만족 서비스 제공
- 추진근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제5조)
- 수행방식 : 서비스 수요자에 사회서비스 이용권(전자바우처)을 지원, 원하는 서비스 제공 기관을 선택하여 공급자 주도 방식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접근으로 사회 서비스 시장 창출 (서비스 개발·심사·관리·점검기능 지자체 부여)
- 사업방식 : 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보조율 : 서울 50%, 서울 이외 시·도 70%, 성장촉진지역 80%)

● 사업구조

- 제공방식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활용(현금·현물보조 아닌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를 전자바우처를 통해 지불)
- 서비스 개발 :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기획 및 발굴(시도·시군구가 지역개발 사회서비스를 스스로 기획, 발굴, 집행, 평가)
- 이용자 선정 : 지역 예산과 수요 적합 우선 순위 선정(중앙정부 이용 대상자 소득기준 상한만 결정, 서비스별 이용 대상자 선정 기준을 예산 집행 현황 및 지역개발 서비스 특성을 고려하여 지자체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결정)
- 서비스 제공자 : 제공기관 등록제(시설 위주 공급자 지원방식 아님, 수요자 지원 방식, 사회서비스 등록기준에 적합한 제공자는 제공기관 등록을 통해 자유롭게 서비스를 제공, 다수의 제공기관을 이용자가 선정하여 시장을 활용하는 구조)
- 가격체계 : 이용자 본인부담금(이용자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이 존재, 사회서비스 시장화 유도)
- 지원조직 : 지역사회서비스 지원단(시도별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선정, 사회서비스 종사자 교육·훈련, 제공기관 컨설팅, 지역 맞춤형 사회서비스 기획·발굴, 지역사회서비스 홍보, 제공기관 현장 점검 등 지원)

(3) 커뮤니티키친(공유부엌) 구축 확대

● 생활SOC 복합화, 정책개선으로 구축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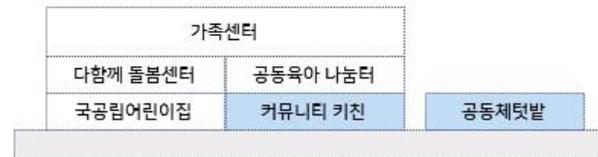
[정책개요]

- 정책목적 : 일상생활과 밀접한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확대,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간 격차 완화하기 위한 생활SOC 추진
- 정책개념 : 먹고, 자고, 자녀를 키우고, 노인을 부양하고, 일하고 쉬는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필수 인프라 시설 구축
- 지원계획 : 3대 분야(여가활력, 생애돌봄, 안전·안심), 8대 핵심과제, 3년간('20~'22) 30조원(지방비 포함 48조원)
- 추진방식 : '생활밀착형사회기반시설정책협의회-생활SOC추진단' → 부처 사업 통합추진, 복합화 대상사업 메뉴 제시 → 지자체가 주도하여 희망사업 선택, 사업계획 제출 → 부처-지자체 지역발전 투자협약, 범부처 공동지원

[추진방안]

- 사업 대상시설 확장 : 일상생활에서 국민편익을 증진시키는 모든 시설(국무총리 훈령, 제2조) → 먹거리 지원시설 가능
- 생활SOC 복합화사업 예시 중 '복지시설 특화형'에 반영 : 먹거리 돌봄 수요 고려 커뮤니티 키친, 식생활체험공간 등 명시
- '커뮤니티 키친'을 포함한 복합화예시(사례) 참고자료 제시 (조리·취사 공간, 식사공간, 교육실, 다목적실, 도시텃밭 등)
- 운영주체 : 지역주민이 주도하여 공동체방식으로 운영 사회적경제조직, 마을공동체, 비영리법인 등
- 프로그램 : 로컬푸드를 매개로 한 먹거리 돌봄 활동·사업, 공동체 프로그램(돌봄밥상, 공동체밥상, 소셜다이닝 등)

[생활SOC 복합화사업 + 커뮤니티 키친]



(3) 커뮤니티키친(공유부엌) 구축 확대

● 도시재생 뉴딜사업, 정책개선으로 구축 확대

[정책개요]

- 정책개념 : 인구 감소, 산업구조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창출 및 지역자원 활용을 통해 경제적·사회적·물리적·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
- 정책목표 : 도시 쇠퇴에 대응하여 물리적 환경개선(H/W)과 주민들의 역량강화(S/W)를 통한 '종합 재생'을 목표로 추진
→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지역공동체가 주도하여 지속적으로 혁신하는 도시'
- 세부목표 : 주거복지 및 삶의 질 향상, 도시활력 회복, 일자리창출, 공동체 회복 및 사회통합 → 도시공간 혁신 전략
- 추진과제 : 노후 저층거주지 주거환경 정비, 구도심을 혁신거점 조성, 도시재생 경제생태계 조성, 풀뿌리 도시재생 거버넌스 구축, 상가 내몰림 현상 선제적 대응
- 사업유형 : 우리동네살리기(소규모주거), 주거지지원형(주거), 일반근리형(준주거), 중심시가지형(상업), 경제기반형(산업)

[추진방안]

- 지침개선 : 지역특화 재생사업(중앙 정부 선정 인정 사업, 경제기반형 제외), 지역사회통합돌봄 특화모델(일반·주거·우리동네)
→ 먹거리 돌봄이 필요한 주민 대상으로 하는 '커뮤니티 키친, 식생활 체험공간' 등 시설 및 서비스 포함
- 예시포함 : 사업(비) 구성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시하고 있는 예시도 및 사업내용 등에 관련 시설을 포함하도록 개선

(3) 커뮤니티키친(공유부엌) 구축 확대

● 푸드플랜패키지/농촌신활력플러스, 정책활용으로 구축 확대

[정책개요]

(1)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사업

- 정책목적 : 지역 푸드플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농림사업과 연계된 주요 사업에 대해 패키지 형태로 지자체에 지원
- 지원사업 : 생산·유통·가공·소비에 필요한 시설과 운영 프로그램 등 지원, 16개 사업(농식품부12, 농진청2, 시·도2)
- 지원대상 : 계획 수립 시군구, 공공급식지원조례, 중소농조직화, 로컬푸드 관리로 공공급식에 로컬푸드 공급하는 지역
- 지원방식 : 지역 푸드플랜 수립 후 필요사업을 통합 신청 → 지자체와 '먹거리 계획협약' 체결 이후 패키지 형태로 지원

(2)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 정책목적 : 지역특화산업 고도화와 사회적 일자리 창출로 지역자립 성장기반 구축 (국가균형발전 기본계획 농업·농촌 핵심사업)
- 대상지역 : 123개 일반농산어촌 시·군 대상 공모 통해 선정, '18~'22년 100개 시·군 선정 계획 ('21년 80개소 선정)
- 추진방식 : 지역이 필요로 하는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 인적자원 개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를 자율적으로 조합 추진

[추진방안]

- 추진방향 : 푸드플랜패키지 지원사업, 농촌신활력플러스 등을 연계하여 지역 거점형 '커뮤니티 키친' 조성 추진
- 사업내용 : 커뮤니티키친 조성 및 운영(프로그램), 식생활 체험공간 조성 및 운영(프로그램) 등
- 지원대상 : 어린이, 노인, 청년 등 취약계층을 포함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먹거리 돌봄 사업 및 프로그램 운영
- 운영조직 : 먹거리 관련 사회적경제 조직, 지역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해당사업 추진단 등 지역공동체형
- 주요기능 : 도시지역 소외현상 극복, 먹거리를 통한 공동체문화 만들기 시도 → 로컬푸드 매개 공동체 밥상, 취약계층 먹거리 지원, 결식문제 대응, 식생활 교육 등의 서비스 제공
- 프로그램 : 커뮤니티 기반의 조리·식사 관련 활동, 먹거리 문제에 대응하는 공동체 (관계)회복 프로그램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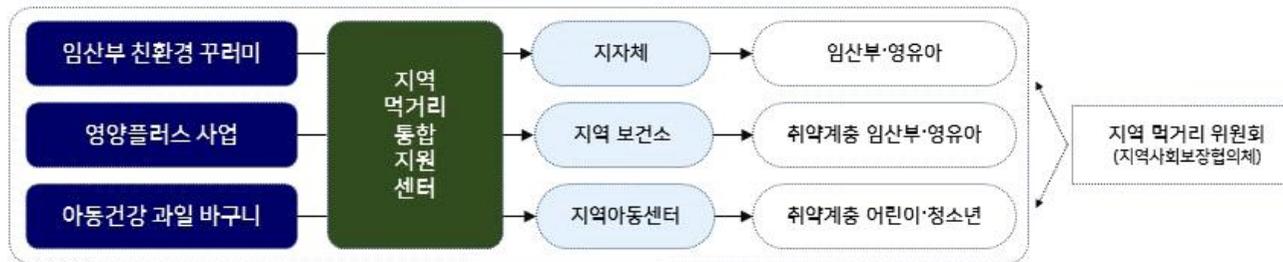
(4) 먹거리 '돌봄 식재료 조달' 방식 개선

● 추진배경

- 지역사회 먹거리 돌봄 사업은 복지·건강 분류, 생애주기별, 지원 방법(급식, 식재료, 보충재, 교육) 등으로 구분이 가능
- 대상사업 : 기존 식품지원 프로그램 내에서 식재료를 직접 공급하는 사업
 - ①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②영양플러스 사업, ③아동 건강과일바구니 시범사업
- 취약계층을 비롯한 모든 국민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식품지원을 위해 지역 먹거리 계획 연계한 지역 농산물 공급 추진

● 추진방안

- 개별 식품지원 사업에 건강하고 안전한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지역 먹거리 전략과 연계한 공급 방안을 마련
- 추진근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개정(안) (취약계층 지원, 지역먹거리계획, 지역먹거리 위원회, 지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 등)
- 지역 먹거리 계획에 근거, 지역에서 생산된 먹거리를 식품지원 정책사업에 공급하는 체계 마련·개선(친환경+로컬푸드 농산물)
- '지역 먹거리 통합지원센터'를 통하여 식품지원 사업에 공급되는 식품·식재료 등의 안정적인 조달체계 구축(기존 주체 포함)



(5) 지역사회 먹거리 돌봄 추진체계 구축

● 지역사회통합돌봄법(안) 추진체계, 개요

- 법안내용 : 제18조, (시군구) 지역사회통합돌봄협의체 설치 및 운영 (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안)
통합돌봄의 원활한 추진과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연계·협력 강화 위해 해당 시·군·구에 설치 운영
- 역할기능 : 심의·자문(지역계획 수립·시행·평가, 통합돌봄 추진,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 간 연계·협력 등)
- 위원구성 :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학식·경험 풍부한 사람,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장, 비영리민간단체 추천, 통합돌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통합돌봄 대상자 및 가족(보호자), 지역주민 등
- 조직운영 :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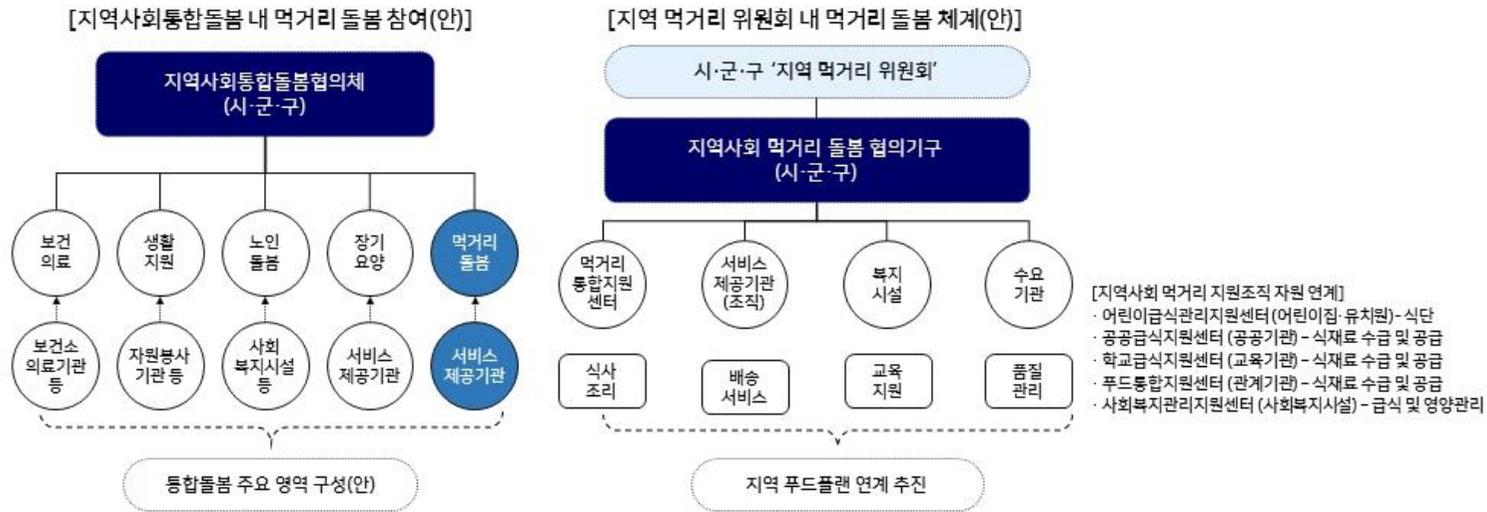
● 추진방안 1, 먹거리 돌봄 주체 참여 근거 마련

- ① 법률 : 지역사회통합돌봄 법률(안)에 먹거리 돌봄 제공자들의 참여 근거 마련
 - '지역사회통합돌봄(안)'의 '지역사회통합돌봄협의체'에 먹거리 돌봄 활동을 하는 기관, 법인, 조직 등 참여 근거 마련
- ② 조례 : 지역사회통합돌봄협의체 조례(안)에 '먹거리 돌봄' 영역의 참여 근거 마련
 - 협의체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적극 해석, 지역사회에서 추진하는 먹거리 돌봄사업, 협의체 참여·활동 가능하도록 지원

(5) 지역사회 먹거리 돌봄 추진체계 구축

● 추진방안 2, 먹거리위원회 내 먹거리 돌봄 협의체 구성 운영

- 먹거리 기본조례 등에 의한 '지역 먹거리위원회' 내에 상시 협의기구로 위치, 지역 푸드플랜 수립 및 시행 과정에 참여
- 먹거리 통합지원센터(공공급식지원센터 등), 먹거리 돌봄 서비스 제공기관(조직), 관련 복지시설, 수요기관 등 참여
- 식사조리, 배송서비스, 교육, 품질관리 등 먹거리 돌봄 영역에서 필요·요구되는 기능·역할에 대한 운영방안 등 논의



감사합니다



지정 토론문

1. 김재철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농수산식품분과 위원)
2. 김정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3. 이인우 (사회적경제지역화연구소 대표)
4. 장영주 (국회입법조사처 산업자원팀장 직무대리)
5. 유동욱 (보건복지부 통합돌봄추진단 팀장)
6. 이재식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복지과 과장)

소규모 공급체계 확충을 통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활성화 제안

김재철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농수산식품분과 위원)

1. 먹거리 기본권의 시대

먹거리 기본권은 건강한 먹거리의 적절한 확보를 시민의 기본적 인권으로 규정하면서, 지역성과 관계성에 중심을 둔 공공성이 강화되고 생태적 지속가능성이 확보되는 먹거리체계를 누릴 수 있는 국민들의 권리를 말한다. 과거 먹거리의 문제가 개인의 문제로 치부되었다면, 전 지구적 기후위기와 사회적 양극화, 고령화,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현 시대의 먹거리는 국가를 포함한 공동체의 문제이며 생존의 문제가 아닌 질의 문제로 되고 있다.

2. 통합돌봄에서 먹거리 돌봄은 먹거리 기본권의 실현

급격한 노령화 사회로의 진입은 지속가능한 돌봄 체계의 구축이라는 과제를 낳게 되고, 시설보호 체계가 아닌 지역 공동체의 역할을 극대화하는 커뮤니티 케어로의 전환은 긍정적 정책 전환이라 할 수 있다.

통합돌봄이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의료, 주거와 함께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먹거리 돌봄이다. 그러나 먹거리 돌봄은 여러 지역의 시범사업에도 불구하고 아직 명확한 대안을 찾지 못한 상황으로 파악된다.

민간 기업부터 사회적기업 등 다양한 기업 형태의 조직들이 먹거리 돌봄에 함께 했지만, 높은 배송 비용 등의 이유로 인해

지속가능한 모델로서 평가받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숫자에 비해 너무 넓은 범위로 설정되는 지역은 기업에는 비용 상승을 불러일으키며, 결국 이러한 문제는 이용자 또는 지자체의 예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또한 어떤 형태든 이윤을 추구해야 하는 기업의 참여는 해당 사업의 입지를 더욱 좁게 만들 여지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공공의 책임성을 명확히 하고 다양한 범위에서 헌신적으로 활동해온 민간·시민사회 영역의 역량을 품고자 하는 노력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3. 소규모 공급체계 확대

커뮤니티 케어는 ‘동네, 마을’에서 이루어지는 돌봄이다. 전문적 영역에 속하는 의료를 제외한 주거와 먹거리 등의 문제는 철저히 동네와 마을에 집중해야 그 해법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에 대한 먹거리 돌봄의 한 대안으로 ‘마을부엌’으로 대표되는 소규모 먹거리 공급체계 확산을 제안하고 싶다.

다양한 이유로 먹거리 빈곤층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전 세계적으로 공동체 부엌 또는 마을부엌, 공유부엌, 소셜 다이닝 (social dining) 등으로 불리는 새로운 현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일본의 어린이 식당, 브라질 벨루오리존치 민중식당, 캐나다 밴쿠버 커뮤니티 기친 등이 대표적인 사례로 회자되기도 한다.

마을부엌은 먹거리 빈곤층에게 식재료나 음식, 쿠폰 등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먹거리를 매개로 교육, 돌봄, 사회적 경제

〈그림〉 마을부엌의 주요 기능과 역할



자료 : 2018 서울시 시정협치사업 ‘마을에서 함께나누고 더불어 성장하기’

일자리 창출 등 먹거리 보장과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기대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민간이 주도하는 다양한 형태의 먹거리 조직(공간)이 존재하며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아직 민간 차원의 자발적 활동일 뿐 행정(국가)의 역할은 일부 보조금을 주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의 주도하에 전개되고 있는 마을부엌 사업은 아직 초보적 수준이기는 하지만 주목할 만하다.

마을과 동네는 먹거리 돌봄뿐만 아니라 여러 다양한 먹거리 수요가 발생하고 유통하는 장이기도 하다. 조금만 둘러보면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경로당, 경로식당, 무료 급식소 등 다양한 형태의 소규모 급식 시설이 존재하며, 노인, 학교 밖 청소년, 임산부, 나 홀로 가구, 저소득 계층 등 사회적, 경제적 먹거리 돌봄이 필요한 계층이 존재한다. 민간의 공동체 역량과 행정의 책임성이 결합하고 먹거리 돌봄이라는 시스템과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한 창의적 사업이 결합하는 공간으로서의 마을부엌은 지역 공동체 사업과 공공급식 확대의 새로운 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4. 먹거리 돌봄의 법제화

통합돌봄이 ‘동네, 마을’에서 삶에 기반한 공동체의 돌봄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논의되고 있는 법적, 제도적 논의의 틀에는 ‘먹거리 돌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이는 앞서 이야기했듯이 여러 시범사업 시행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대안을 찾지 못한 반증이다.

하지만 삶의 가장 기초인 먹거리 문제에 대한 대안이 없이는 통합돌봄은 반쪽짜리 사업에 그칠 것이다. 먹거리 돌봄을 위한 협의체계, 공급방식, 제원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 없이는 먹거리 돌봄은 후순위로 밀리게 되며 결국 표류할 가능성이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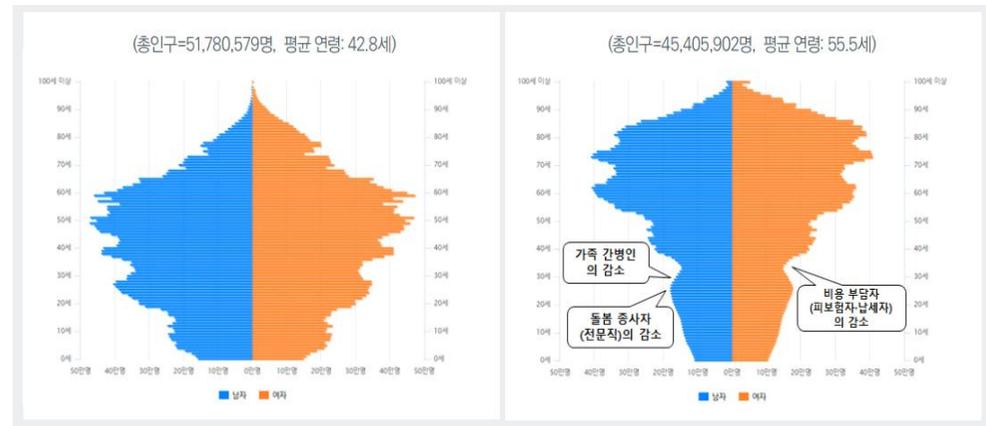
우선 법제화 논의 과정에서 보건의료, 주거와 함께 먹거리 돌봄이 명문화되어야 하며, 그로 인하여 지자체의 관련 조례안 마련과 협의체 구성에 있어 먹거리 관련 부서와 먹거리 관련 민간 전문가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 지자체에서 수립 중인 푸드플랜에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전반적 먹거리 보장과 기본권의 실현 차원으로 관련 사항이 다루어져야 함이 옳다.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 중 먹거리 돌봄의 주요 과제 제안

김정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1. 국내 먹거리 돌봄 환경의 변화

- (인구동향) 우리나라는 2017년 고령사회로 진입 후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여 인구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어 2025년에는 국민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 노인으로 채워지는 초고령사회가 될 전망이다.
 - 2020년과 2055년의 인구 피라미드를 비교해보면, 가족 간병인, 돌봄 종사자, 사회적 비용 부담자에 해당하는 청년 및 중년층의 인구 감소가 매우 우려되는 수준이다.
- (노인 빈곤율)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43.3%로 OECD국가 중 1위(2018년), OECD 평균(14.8%)의 약 3배 수준으로 나타났다.
- (노인진료비 부담) 2020년 기준 노인진료비는 전체 진료비 43.1%를 차지하였고 생애 전체진료비의 절반 이상을 노년기에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노인의 84%가 1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보유하



고 있고, 2개 이상의 복합이환자는 54.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노인실태조사, 2020).

□ (노인의 영양수준) 국민건강통계(2014)를 보면, 노인의 70~80%는 필수영양소인 비타민, 무기질 및 칼슘 섭취가 부족하고, 고령자들은 몸이 아프고 귀찮거나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섭취 행태는 독거노인 수의 증가와 함께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 노인의 필요추정량 대비 열량섭취량은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73.5%, 비수급자는 78.4%로 권장섭취량에 미치지 못하고, 특히 칼슘, 비타민 A, 리보플라민, 비타민C는 크게 부족한 실정임.¹⁾
-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²⁾에 따르면, 고령자의 연령 증가와 함께 영양섭취 부족자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남성보다 여성이 더 많았고, 1인 가구의 비율이 높았으며, 특히 75세 이상 후기고령자는 19.4%가 저작 불편을 호소하고 영양섭취부족자 비율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가정의 핵가족화가 급속히 진행되어서 노인 세대가 증가하고 있고, 그 결과 식사 준비 및 조리 등의 가사 활동을 온전히 노인 홀로 담당함에 따라 노인의 식생활은 더욱 나빠지고 심한 경우 영양불량 상태를 초래할 수도 있다. 통계개발원의 「국민 삶의 질 2020」보고서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5명 중 1명은 독거 노인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노인 1인 가구는 지속적인 증가 추세이므로 영양섭취 부족자의 비율은 계속 증가할 것이다.
- 노인들의 건강상의 문제는 대부분 영양공급의 적절성과 직결되므로 이들의 건강유지와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노인의 특장별 맞춤형 식사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

□ (노인의 신체적 기능 저하) 노인 또는 고령의 질환자의 영양불량은 3대 섭식(씹기, 삼키기, 소화기능) 장애에 기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들은 기능 장애로 식욕을 잃게 되고 이로 인해 영양 불균형이 심각해질 수 있으며 심리적 불안감이 고조되는 등 전반적인 삶의 질이 떨어지게 된다.

1) 김상효 외. (2018). 취약계층의 식생활, 국가의 역할, 농업전망발표자료

2) 제5기(2010-2012년)와 제6기(2014년)

□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 2026년 커뮤니티케어 실시를 앞두고 현재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가 진행 중으로 지역사회의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들은 대부분 노인이나 장애인 이므로 이들을 대상으로 한 돌봄사업 기반 구축이 추진되고 있다.

□ (먹거리 돌봄의 효과) 지역사회통합돌봄 대상자에게 적절하고 균형 잡힌 영양공급은 건강 유지, 질환화 예방, 치료 지원 등의 역할로 삶의 질과 건강수명의 증가를 가져올 수 있다.

- 노인의 경우 섭식장애를 예방하거나 심화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고, 섭식장애 수준에 따라 적절한 식사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에 섭식장애 수준과 생활환경에 적합한 맞춤형 식품과 식사서비스의 개발 및 활발한 보급을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이 시급하다.



2.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 중 먹거리 돌봄의 주요 과제

□ (노인의 특징별 맞춤형 식품 및 식사 서비스 제공) 노인은 활동적이고 자립생활이 가능한 건강한 노인부터 자립생활은 가능하지만 건강하지 않은 노인, 자립생활이 어려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가급여 수급자 또는 시설급여 수급자, 경제적 취약노인 등 매우 다양한 욕구를 가진 인구집단이다.

- 노인의 자립적 생활 정도에 근거한 식생활 특성에 따라 특징별, 맞춤형 식품 및 식사서비스 제공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 및 정책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 노인의 특징별 맞춤형 식품의 활성화와 현장 적용 확대는 건강 취약 노인의 영양 상태와 삶의 질 개선 차원에서 중요한 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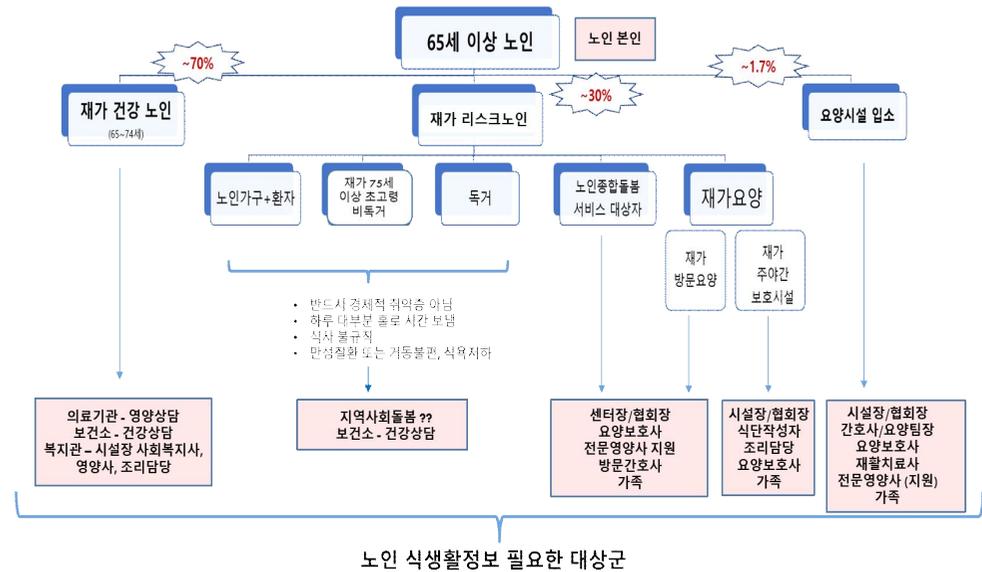
책이 될 뿐 아니라 노인의 질병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 (영양사정으로 지역사회통합돌봄 대상자 발굴)

- 돌봄 대상자의 영양사정(영양과 건강 상태 파악)을 통해 돌봄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평가하고, 지역사회통합돌봄 사례관리 수대상자를 선정하는 절차로 활용한다. 이때 활용될 영양사정 도구의 개발이 선행되어야 하겠다.

□ (먹거리 돌봄 관련 교육 방법 및 내용 재정비)

- 돌봄 대상자를 위한 식생활 교육지원: 노인의 특성별 맞춤형 식생활 교육을 추진한다.
- 먹거리 돌봄 전문인력 양성 : 먹거리 돌봄에 전문화된 교육과정의 교육대상은 먹거리 돌봄 관련 전문인력으로 양성되기 원하는 다양한 직업군들이 모두 해당될 수 있다.
- 따라서 직업군별 개별직무교육 형태가 아닌 먹거리 돌봄에 대한 지식수준에 따라 등급(초-중-상)을 분류하여 직업군 통합교육으로 추진할 수 있다.
- 이는 특히 커뮤니티케어 현장에서 서비스이용자 중심의 직업군 간의 협업이 중요하기 때문에 서로의 업무영역을 이해하고 협조하며 ‘노인 맞춤형 먹거리 돌봄’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전문성을 배양하는 매우 유익한 교육의 기회가 될 것이다.
- 이들 직업군에는 영양사와 조리사 뿐 아니라 식사와 영양 돌봄 현장 종사자들인 사회복지사, 생활지도사,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등이 해당될 수 있다.



□ (먹거리 돌봄의 표준화)

- 고령자의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아프고

병든 고령자 또는 건강하고 경제력 있는 고령자 등 특징별 맞춤형 식품과 급식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먹거리 돌봄 강화를 위한 지원제도 중 기본이 품질 표준화이다. 고령친화식품 식재료 및 식품서비스에 대한 인증제도 도입, 복지관,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의 식사제공 지침 마련 및 안전식단 기준 보급, 장기요양시설 급식서비스 관련 식사영양돌봄의 평가지표 개선, 노인전문 영양사 및 조리사 등 관련 전문인력 양성 매뉴얼 및 현장사례중심 교육교재 개발 등이 추진되어야 한다.
- (적정 식단가 책정체계 마련) 협의체 또는 위원회 운영으로 지역에 따른 식단가 책정체계 구축 또는 산정된 식비단가의 확인절차가 마련될 필요가 있고, 식비단가는 원칙적으로 공개되어야 하겠다.

(FGI 조사결과) 식단을 짤 때 단가를 고려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서 노인급식에 대한 식단가 조정이 필요
“요즘 학교에서는 단가가 5,000원이에요. 그냥 식자재비만. 그래서 나라에서 조금 지원해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양사 D)

“현재 시설은 식단가가 1,000원이었는데 전에 시설은 식단가가 1,300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300원 차이인데 메뉴 나갈 수 있는 양 퀄리티가 조금 달라졌거든요.” (영양사 C)

(FGI 조사결과) 계획성 있고 지속가능한 식품지원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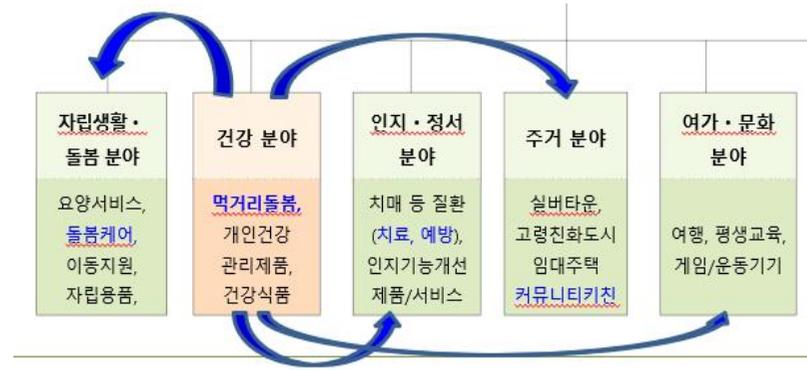
“관리해야 할 인수가 많다보니 일일이 식사 도움을 주는 건 어려워요. 방문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주어지는 시간은 10분 뿐이라, 식사까지 챙겨드리기는 더더욱 어렵구요. ... (중략) ... 후원물품이 가끔씩 들어오긴 하지만, 어렵도 없지요.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활지원사이쪽으로는 어쨌든 식품이 그렇게 풍족하지 않아요. 한 번씩 내려오면 한두 분 것만 내려오니까, 한두 분 드리면 없잖아요. 애매하죠. 노인들 요구를 우리가 만족시켜드리지 못해요.” (생활지원사B)

“빵 같은 것도 후원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식사를 조금밖에 못 하시고 빵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나눠서 갖다 드리면, 어르신들은 배고플 때 하나씩 드시거든요.” (사회복지사C)

-
- (비용의 차등 본인부담) 현재와 같은 경제취약계층 뿐만 아니라 돌봄이 필요한 모든 노인과 장애인 등으로 대상자 확대가 필요하다.
 - 저소득층 등 특정 대상에 한정된 노인 급식 프로그램에서 벗어나 다양한 노인층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와 함께 고령자의 사회적 네트워크를 강화할 수 있는 급식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확대해 나가도록 한다.
 - 경제 상태와 무관하게 보편적으로 이용이 가능한 재가노인 대상 배달식사서비스를 접목하고, 양질의 식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서비스 유료화 추진과 산업화가 절실하다.
 - (지역사회통합돌봄 시행) 2006년 고령자의 삶의 질 개선에 대한 공적 책임을 강화하여 고령친화산업진흥법이 제정되었으나, 컨트롤타워의 부재로 현재까지 활성화되지 못한 실정이다. 이제는 변화된 패러다임 하에서 중앙정부는 고령자 중심의 통합적 건강관리를 목표로 법률적·제도적 지원과 사전 예방적 건강정책과 관련된 부처들의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고령자 건강관리서비스 현장의 주체가 되는 지방정부는 보건·복지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과제) 조직의 체계화를 위해 관계 부처간의 협업체계 구축과 부처별 또는 지방정부에 전담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먹거리 돌봄 관련 조직으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참여를 확대하고, 돌봄 서비스 분야들을 먹거리 돌봄과 연계하여 노인을 위한 위생 안전과 균형 잡힌 영양관리 지원을 통해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이때 관계 부처 간 및 중앙과 지방정부 간의 밀접한 협업 체계 구축이 중요하다.
 - (먹거리 돌봄과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 서비스와의 연계) 지역사회통합돌봄 사업 중 먹거리 돌봄사업은 거의 모든 돌봄 분야와 연계되기 때문에 일상생활 지원의 하나의 꼭지로 다루기에는 그 의미가 크고 다양하다. 어디서나 언제나 어떤 것이나 연계가 가능하도록 독립적인 영역으로 분리하고 식재료부터 고령친화 식품과 같은 가공식품 및 식생활 교육까지 폭넓은 영역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 (지역사회통합돌봄 중 먹거리 돌봄의 기대효과) 노인의 특징별 맞춤형 먹거리 돌봄을 위한 법제도적 지원에 따른 기대 효과를 살펴보면, 초고령 사회에서는 국민의료비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므로 국민의료비, 특히 노인의료비 절감과 노인의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할 수 있겠다.

- 최근 수행되고 있는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 중에도 춘천시는 식사에 대한 선호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고, 부산시 진구에서는 사업 전 후의 건강상태 호전효과가 확인되었다.
- 특히 고령후기 노인들은 치아 소실, 구강·인두·식도 근육 약화에 따라 씹거나 삼키는데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에 따라 상시적으로 영양불량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노인의 영양 상태와 삶의 질 개선 차원의 대책이 될 것이다.



먹거리 돌봄 추진체계와 조달체계 마련 필요

이인우 (사회적경제지역화연구소 대표)

많은 지자체 단위에서 푸드플랜이 수립되고, 먹거리 기본조례가 제정되고 있습니다.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는 지난해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 연구 용역도 마쳤습니다. 올해는 농특위의 농수산식품분과 위원회에서 지역을 찾아가서, 지역사회 먹거리 돌봄과 지자체 통합돌봄 정책의 활성화 방안을 토론하며 먹거리 정책의 창의적 발전 방안에 대한 견해들을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제 내용에는 몇 가지 의미 있는 시사점들이 정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발표자료에는 사례가 축약되어 있지만, 먼저,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먹거리 돌봄 사례들을 관찰할 때, 현행 정책 프로그램의 명칭으로 그 의미를 모두 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을 던져주었다고 봅니다. 지자체 단위에서 시범사업으로 전개되는 통합돌봄 정책이 있고, 또 지자체가 이미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먹거리 돌봄 사업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역의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먹거리 돌봄 활동들이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그런 다음, 그렇게 자발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활동은 ‘국가적 돌봄’과 다른 결에서 ‘시민적 돌봄’이라는 차원을 추가할 때 더 잘 이해될 수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저는 이 문제의식을 먹거리 돌봄에 대한 인식과 개념이 확장될 필요가 있다는 현황과 분석 내용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다음은 그런 분석에 이어서 법률적 근거가 필요하고, 5가지 프로그램을 추진 과제로 제안했습니다. 발제 내용은 위의 문제 의식처럼 확장된 지역사회 먹거리 돌봄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농업·농촌식품산업 기본법’에도 근거가 마련되어야 하고, 지역사회통합돌봄법을 제정하는 것은 물론 그 안에 먹거리 돌봄의 다양한 활동을 담을 수 있도록 먹거리 돌봄 관련 사업추진 조항을 반영해야 한다고 과제를 제안하고 있는데, 저는 이 점을 적절하게 잘 제안했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지역사회 먹거리 돌봄을 활성화하고 통합돌봄 정책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이 정책과제와 제안하신 프로그램들에 대한 행정 추진체계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었던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례에서 개념 확장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그런 맥락에 맞게 행정 추진체계 내에 것처럼 확장된 의미의 지역사회 먹거리 돌봄을 추진할 수 있는 직제의 편제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가령, 미국 농무부에는 먹거리영양국(FNS : Food and Nutrition Service)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런 행정의 추진체계도 준비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지역사회 먹거리 돌봄 활동은 돌봄용 먹거리가 운반되고 전달되는 경로가 일반 상업용 먹거리의 판매유통 경로와 다른 것으로 나타납니다. 지역사회에서 자발적인 먹거리 돌봄 활동을 활성화시킨다면, 커다란 거점 물류 시설들이 필요하기보다 소규모의 돌봄 먹거리들이 주문되고 발송되며, 또 소규모의 약속된 거점에 집결될 수 있는 이른바 ‘돌봄 먹거리 유통 채널’에 대해 생각해야 합니다. 거기에는 명칭이 너무 소규모로 한정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조금 큰 규모의 지역사회 자발적 돌봄 단체들이 공유할 수 있는 ‘공유냉장고’ 격에 해당되는 공동의 물류 창고가 필요할 것입니다. 검토해볼만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사회 먹거리 돌봄 법제화 검토

장영주 (국회입법조사처 산업자원팀장 직무대리)

노인기와 아동기의 영양관리는 건강과 면역증진, 질병관리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생애주기로 식사(식생활)의 양과 질, 안정성, 영양 균형, 그리고 식사환경이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식품선택 관련 결정권이 다른 생애주기에 비해 제한되어 있고 식사를 준비하는 조리기술도 부족하기 때문에 가족이나 돌봄 서비스 제공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특이성도 있어 경제적 취약계층이 아니더라도 영양 불균형 및 결핍, 식사의 불안정성으로 인한 정서적 문제 발생 등 삶의 질에 대한 만족도가 낮을 가능성도 높다.

저출산 초고령화 시대를 준비하는 지금, 특히 80세 이상 후기고령인구와 1인 또는 고령인구 구성 가구의 증가는 기존 경제 취약계층 대상 사회복지 시스템의 사각지대 증가로 이어져 정책적 개선이 주목되고 있다. 고령인구의 경우 앞서 설명하였듯이 경제적 요인뿐만 아니라 신체적 요인의 변화로 인한 이동 불편으로 식품의 직접 구매와 조리가 어려워 식생활을 스스로 영위하기 어렵고, 치아 손실로 인한 저작 기능 저하 및 소화 기능 저하로 영양소 섭취수준 또한 낮은 편이다. 경제 취약계층 대상 복지 서비스 외 영양 취약계층의 영양관리는 보건복지부 소관 「국민영양관리법」 제7조에 따른 ‘국민영양관리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시행되고, 지역사회 영양개선사업은 「국민건강증진법」 제15조에 따라 통합건강증진사업 내에 포함되어 실시하고 있으나, 사업내용 등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황으로 새로운 서비스 수요와 대상 확대의 근거로 적

용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경제 취약층 대상 영양관리 사업은 사회복지 정책의 노인복지관 급식, 무료급식, 도시락 배달, 반찬 배달사업, 푸드뱅크, 과일간식 제공사업 등 다양한 복지채널과 제공방법으로 서비스가 제공되어 대상자 중심의 통합 서비스로 그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한다는 정책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국민영양관리법」

제7조(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국민건강증진법」 제5조에 따른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중장기적 목표와 추진방향
2. 다음 각 목의 영양관리사업 추진계획

가. 제10조에 따른 영양·식생활 교육사업	나. 제11조에 따른 영양취약계층 등의 영양관리사업
다. 제13조에 따른 영양관리를 위한 영양 및 식생활 조사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양관리사업
3. 연도별 주요 추진과제와 그 추진방법
4.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및 관리 방안
5. 그 밖에 영양관리정책수립에 필요한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협의절차, 제3항의 통보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국민건강증진법」

제15조(영양개선)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영양상태를 조사하여 국민의 영양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영양에 관한 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영양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영양교육사업
2. 영양개선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3. 기타 영양개선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업

오늘 논의되는 지역사회통합돌봄 서비스는 복지국가로 한걸음 나아가기 위한 진일보한 정책으로 평가된다. 그동안 차상위 계층 및 영양 취약계층의 식사 및 영양 서비스 제공사업은 정책 시행의 사각지대에 놓여 일부 민간단체 중심으로 다양한 모델이 시행되어 왔는데, 오늘 토론회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정부 부처 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공공과 민간 간 노력이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정책의 지속성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제화 방안을 논의한다는 점에서 기대되는 입법·정책적 합의가 매우 크다. 오늘 논의의 주제인 취약계층 먹거리 돌봄 사업은 음식을 직접 제공하거나 신선식품 또는 가공식품으로 제공하거나 카드 등 바우처 형태로 제공되던 먹거리 복지 양상에서 커뮤니티키친(공동부엌) 등 취약계층의 식생활을 지역사회가 공유하는 서비스로 발전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가치가 매우 높다고 평가된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필요한 고령인구와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효과적인 정책 수단으로 구체화함으로써 통합돌봄 서비스의 질 향상과 만족도 증가에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대한 시대적 정책 수요가 높고 이로 인한 시설 중심의 사회적 비용 절감효과도 크게 기대되는 바, 발표사례와 같이 부산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법률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의 지속성, 사업추진의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단편적인 1회성 식사 제공 등 기존 수혜성 복지형에서 식생활 공유형으로 전환하고, 맞춤형 통합돌봄 서비스를 생활 모든 분야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여야 한다. 지역사회통합돌봄 서비스에 ‘식사·영양 서비스’를 포함하는 방안은 그 일환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지역사회 먹거리 순환체계, 사회적기업과 연계하여 상생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도시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더 취약한 농어촌 지역에 우선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먼저, 법제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된 「지역사회통합돌봄법(안)」에 먹거리돌봄 관련 내용을 필수서비스로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지역사회통합돌봄 서비스의 구체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률 제정 등

제도 도입 시 시행 가능성이 높은 방안이다. 다만 기존 사회복지 서비스 제도와 차별성, 즉 지원 대상, 서비스 내용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는 점, 법제화에 따른 예산 확보 방안을 마련하는 게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성공 정책사례는 차상위 계층 및 영양 취약계층 대상 영양플러스사업을 들 수 있다. 임산부, 영유아의 영양개선을 위하여 영양보충식품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사업명이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국민영양관리법」상 취약계층 영양관리 사업의 일환으로 예산 및 조직(중앙 정부, 지방자치단체)을 확보하여 표준모델을 마련하고 전국 단위 사업으로 시행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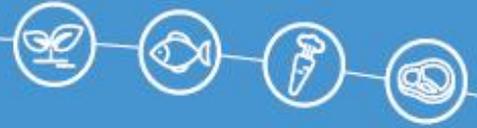
두 번째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식품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방안을 살펴보면, 동 법의 입법 취지에 맞는 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보건복지부 소관 「식품기부에 관한 법률」과 같이 입법 목적을 분명히 하는 법률 제정이나 관련 규정 신설을 논의하는 방안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법률에 근거한 지역사회 먹거리 돌봄 서비스를 경제수준에 따라 자기 부담금 등 대상자에게 부담하게 할 경우 신선식품 및 가공식품 제공은 「식품위생법」상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공동조리 형태 음식의 형태로 제공되는 돌봄 서비스의 경우 영양관리 기준, 위생점검 및 식품안전 기준 마련, 식중독 발생 등 위기 상황 대처기준 등 세부적인 지침 마련이 요구된다. 또한 운영 규모에 따른 집단 급식소 여부 문제도 발생할 여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와의 협의도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농림축산식품부가 시행하고 있는 농식품바우처사업, 임산부 친환경농산물지원사업, 과일간식제공사업 등과 보건복지부 소관 영양플러스사업(임산부 영유아 영양보충사업), 식품기부 사업 등의 식품을 제공하는 사업들과 연계하여 지역사회 먹거리 돌봄 통합 네트워크를 구축하면 먹거리 복지의 사각지대 규모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장기적으로는 질적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공공급식, 결식아동 식사 제공 등 급식 및 식사 서비스 먹거리 기본권 보장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한 안전망을 설계하여야 한다.

유동욱 (보건복지부 통합돌봄추진단 팀장)

이재식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복지과 과장)



지역사회 먹거리돌봄 법제화를 위한 정책토론회